

ISSN 2384-3497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청구별 소송건수 / 10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12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13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14
6. 피고 분류 / 15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7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 18
3. 청구별 결과 / 19
4. 침해유형별 결과 / 20
5. 원고유형별 결과 / 21
6. 매체유형별 결과 / 22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3
2. 청구액 / 24
3. 인용액 / 25
4. 인용액 분포 / 26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27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28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0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 31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32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3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4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38

표 목차

〈표 1〉 코딩 항목	6
〈표 2-1〉 심급별 건수	9
〈표 2-2〉 청구별 건수	10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1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12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13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14
〈표 2-7〉 직위별 피고 구성	15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16
〈표 3-1〉 심급별 결과	17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17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18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19
〈표 3-5〉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20
〈표 3-6〉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21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22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22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통계	24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통계	25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26
〈표 4-4〉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27
〈표 4-5〉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28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29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0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31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32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3

〈표 5-1〉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34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35
〈표 5-3〉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36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37
〈표 5-5〉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38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별)	39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40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41
분석 판결 목록(민사 164건)	42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31582 판결 49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합505567 판결 57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로 보도된 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여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합539881 판결 68
취재내용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상당성이 부정되면 공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1-4.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2056372 판결(환송후심) 77
특정 단체를 중복세력으로 지칭하거나 내부에 중복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더라도 원고가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5086606 판결 85
특정인을 '사기꾼'으로 표현했다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면서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며 수사적인 과장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41766 판결 93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형사사건 미확정판결문을 기자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한 것은 형사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247525 판결 102
제보자가 제보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제보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제보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247746 판결	107
기사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었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언론, 인터넷 등 공공 영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언론사가 원고의 삭제 요청에 응하여 실명을 삭제하였다면 성명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합536240 판결	111
목적 내지 의도와 같은 내심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단자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55032 판결	121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했더라도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원장으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1-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36048 판결	128
제보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면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12. 창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나63567 판결	136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는 하지만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닌 사적 영역의 사건을 언급하여 원고의 신원이 드러나게 하고, 형사재판중인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가해자라는 인상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보도로서 공익성, 진실·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587715 판결	146
원고가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지엽말단적이어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가합590223 판결	159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 추가되었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523541 판결	175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183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로서 공공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어 추후보도청구는 이유없다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1. 선고 2018가합11225 판결	188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보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7707	194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는 표현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사이트에 게시되어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41603 판결	203
기사의 주요 부분에 허위가 없고,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100160 판결	213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기사삭제를 청구하였으나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7가합2014 판결	221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정보도를 통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면 특정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기사삭제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분쟁으로 인한 갈등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며 매년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므로 과거의 법률과 법리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을 연구하고 법리를 참고·수용하기 위하여,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관계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계량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한 검색¹⁾ 및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보도금지 ⑩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20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164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164건이 수집되었다.

기존에는 전수에 가까운 언론관련판결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창구가 장기 폐쇄되어 판결문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보도금지가처분과 같은 가치분결정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왔으나 판결과 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판결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221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사건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건으로 분할한 결과 분석대상 총 건수는 221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421건

분석 대상 판결은 대부분 단일 청구가 아니라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하는 등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221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 청구권별 총 건수는 421건이다.

마. 통계 작성 항목의 변화

이전 보고서에서 작성했던 상소율, 보도유형별 통계, 조정을 거친 사건에 관한 통계 등 일부 통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문제,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조와 판결 익명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20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등을 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보고서 대비 통계항목이 일정부분 조정되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고	07.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원고 분류
피고	09. 매체별 피고 분류	
	10. 사건 피고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분류	12. 매체분류	
청구별 처리결과	13. 청구별 처리결과	
	13-1. 정정보도	13-4. 손해배상
	13-2. 반론보도	13-5. 기사삭제
	13-3. 추후보도	13-6. 보도금지
원·상소심 결과	14. 심급별 결과	
	14-1. 1심	14-4. 환송후심
	14-2. 2심	14-5. 재상고심
	14-3. 3심	
기타	15.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손해배상	16. 사건 청구액	19. 매체별 인용액
	17. 사건 인용액	20. 손해배상 기각사유
	18.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1. 정정 기각사유	22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23. 반론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24. 보도의 인용 여부	27. 보도위치
	25. 보도시기	28. 보도제목
	26.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²⁾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적 인물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적 인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2)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소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 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6)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번복' 등으로 코딩했다.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 ② 다수 매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체별로 기재했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는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청구액에 A신문사에 1억원, B신문사에 1억원 각각 기재
- ③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지면과 인터넷(언론사닷컴)에 동시에 보도계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가 1개 언론사이지만 매체 분류상 2개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청구액과 주문 인용액을 각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A신문사에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지면과 인터넷 페이지에 동시에 보도계재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1/2로 나누어 기재
- ④ 언론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인용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1억 원만 기재
- ⑤ 상소심의 판결문에 청구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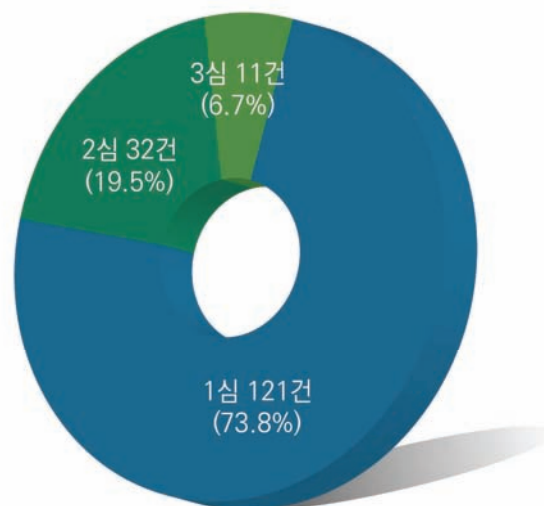
2020년도에 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73.8%, 2심 19.5%, 3심 6.7%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21건(73.8%),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32건(19.5%), 3심이 11건(6.7%)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2.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구분한 후 매체별로 청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가 61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54건(24.4%)으로 뒤를 이었다.

〈표 2-2〉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 정	20	9.0
정정/반론	12	5.4
정정/반론/손배	30	13.6
정정/손배	61	27.6
정정/기사삭제/손배	13	5.9
반 론	5	2.3
추후/손배	2	0.9
손해배상	54	24.4
기사삭제/손배	10	4.5
보도거제/손배	1	0.5
보도금지/손배	1	0.5
기사삭제	3	1.4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9	4.1
합 계	221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181건(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청구 145건(34.5%), 반론보도청구 56건(13.3%), 기사삭제청구 35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45	34.5
반론보도	56	13.3
추후보도	2	0.5
손해배상	181	43.0
기사삭제	35	8.3
보도금지	1	0.2
보도거제 ³⁾	1	0.2
합 계	421	100.0

3) 원고가 피고 언론사에 특정 내용의 보도자료 게재를 청구한 사례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46건(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6건(3.7%),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법익에 관한 통계는 판결문에서 법익 침해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사삭제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침해당한 인격권을 별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따로 통계화하지 않았다.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46	89.0
명예/모욕	1	0.6
명예/모욕/초상	2	1.2
명예/사생활	3	1.8
명예/성명	1	0.6
명예/신용	1	0.6
명예/신용/재산	1	0.6
명예/재산	6	3.7
명예/초상	1	0.6
명예/초상/사생활	1	0.6
사생활	1	0.6
합 계	164	100.0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공적 인물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90건(54.9%),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74건(45.1%)이었다. 전체 원고 유형 가운데 공적 인물이 5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인 31건(18.9%), 기업 26건(15.9%)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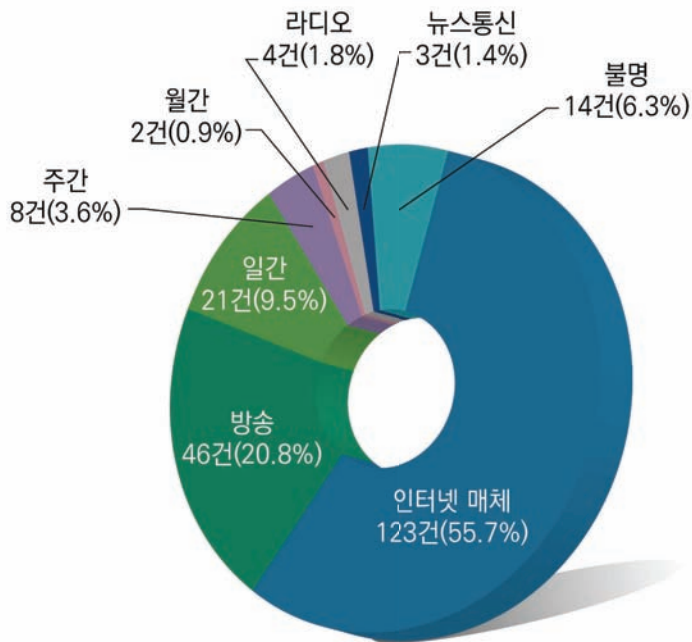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공적 인물	51	31.1	
	일반인	31	18.9	
	고위 공직자	8	4.9	
	소 계	90	54.9	
단체	기업	26	15.9	
	일반단체	13	7.9	
	종교단체	10	6.1	
	공공단체	7	4.3	
	언론사	6	3.7	
	교육기관	4	2.4	
	지방자치단체	3	1.8	
	국가기관	2	1.2	
	시민단체	2	1.2	
	정당	1	0.6	
	소 계	74	45.1	
	합 계		164	100.0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인터넷 매체, 특히 인터넷 신문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총 221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123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송 46건(20.8%), 일간신문 21건(9.5%), 주간신문 8건(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23건)의 경우, 인터넷신문이 70건(31.7%), 방송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사닷컴이 53건(24.0%)으로 집계되었다. 판결문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매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불명으로 집계하였다.

6.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221건의 피고를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12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64건(2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7〉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12	50.7
언론사/담당	64	29.0
언론사/대표/담당	11	5.0
담당	8	3.6
대표	4	1.8
대표/담당	4	1.8
언론사/대표/국장/담당	4	1.8
언론사/국장/담당	3	1.4
언론사/부장/담당	3	1.4
언론사/대표	2	0.9
언론사/대표/국장	2	0.9
언론사/대표/부장/담당	2	0.9
대표/국장/담당	1	0.4
언론사/국장/부장/담당	1	0.4
합계	221	100.0

피고 분류를 다시 언론사 및 언론사 내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204건 (58.0%), 담당 기자(또는 PD) 101건 (28.7%), 대표이사 30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담당자, 대표 순으로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204	58.0
대 표	30	8.5
국 장	11	3.1
부 장	6	1.7
담 당	101	28.7
합 계	352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 관련 소송 원고 승소율은 40.9%

2020년도 언론 관련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율은 40.9%로 집계되어 2019도 원고 승소율(46.6%)과 2018년도 원고 승소율(46.4%)에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은 39.7%, 2심(환송후심 포함)은 40.6%로 승소율이 전년 대비 낮게 집계되었고, 3심은 54.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원고 승소율(%)
1심	48	73	39.7
2심	13	19	40.6
3심	6	5	54.5
합계	67	97	40.9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심급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심	45.7%	41.8%	39.7%
2심	44.9%	55.1%	40.6%
3심	53.6%	55.9%	54.5%
전체 원고 승소율	46.4%	46.6%	40.9%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92.9%

분석 대상 판결 164건 중 2심 31건(환송후심 1건 제외)과 3심 11건을 합산한 42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일부 인용 포함)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92.9%(39건)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90.3%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100%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반복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2심	31 (100.0)	12 (38.7)	16 (51.6)	2 (6.4)	1 (3.2)
3심	11 (100.0)	6 (54.5)	5 (45.5)	0 (0.0)	0 (0.0)
합계	42 (100.0)	18 (42.9)	21 (50.0)	2 (4.8)	1 (2.4)
		39 (92.9)		3 (7.1)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30.4%로 가장 높아

164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청구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청구(181건) 원고 승소율이 30.4%(55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정보도청구(145건)의 원고 승소율은 28.3%(41건), 반론보도청구(56건) 중 원고 승소율은 25%(14건)로 나타났다. 청구권별로 계산한 원고 승소율은 28.3%로 집계되었다.

※ 전술한 통계에서 원고 승소율을 40.9%로 소개했으나 청구권별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의 하나의 소송에서 다수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에도 원고 승소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청구	총건수	기각	각하	인용	원고 승소율(%)
정 정	145	103	1	41	28.3
반 론	56	39	3	14	25.0
손 배	181	127	0	55	30.4
추 후	2	2	0	0	0.0
기사삭제	35	26	1	8	22.9
보도금지	1	0	0	1	100.0
보도개재	1	1	0	0	0.0
계	421	298	5	119	28.3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1.8%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1.8%로 나타났다.

그 외 침해유형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표본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표 3-5〉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침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명 예	146	61	41.8
명예/모욕	1	0	0.0
명예/모욕/초상	2	1	50.0
명예/사생활	3	1	33.3
명예/성명	1	0	0.0
명예/신용	1	1	100.0
명예/신용/재산	1	1	100.0
명예/재산	6	2	33.3
명예/초상	1	0	0.0
명예/초상/사생활	1	0	0.0
사생활/인격권	1	0	0.0
합 계	164	67	40.9

5. 원고유형별 결과

공적 인물,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공적 인물 49.0%, 일반인 25.8%, 고위공직자 12.5%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승소율이 2019년 51.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단체의 경우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71.4%로 가장 높았으나 표본이 7건에 불과하였다. 기업의 승소율이 42.3%로 평균 승소율을 상회하였으며 일반단체, 종교단체의 승소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44.6%)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37.8%)보다 높았다.

〈표 3-6〉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개인	고위 공직자	8	1	12.5
	공적 인물	51	25	49.0
	일반인	31	8	25.8
	소 계	90	34	37.8
단체	기업	26	11	42.3
	일반단체	13	7	53.8
	종교단체	10	5	50.0
	공공단체	7	5	71.4
	언론사	6	1	16.7
	교육기관	4	2	50.0
	지방자치단체	3	1	33.3
	국가기관	2	1	50.0
	시민단체	2	0	0.0
	정당	1	0	0.0
	소 계	74	33	44.6
합 계		164	67	40.9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3.9%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관련 소송(123건)의 원고 승소율은 43.9%(54건)로 나타났다. 주간지(8건) 및 월간지(2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각 50.0%를 기록하였고 일간지(21건)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28.6%, 방송(46건)에 대한 승소율은 30.4%(14건)였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 매체	123	54	43.9
방 송	46	14	30.4
일 간	21	6	28.6
주 간	8	4	50.0
월 간	2	1	50.0
라 디 오	4	1	25.0
뉴스통신	3	0	0.0
불 명	14	5	35.7
계	221	85	38.5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대상 사건에서 55.7%(총 70건 중 원고 승소 39건), 언론사닷컴 대상 사건에서 28.3%(53건 중 원고 승소 15건)로 파악되었다.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신문	70	39	55.7
언론사닷컴	53	15	28.3
합 계	123	54	43.9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언론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이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식이 손해배상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권과 달리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성격이 달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⁴⁾과 최빈값⁵⁾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0.4%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181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청구금액이 인용된 건은 55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0.4%로 집계되었다.

4)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5) 최빈값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716만 원, 중앙값 5,000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34.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판결문에 손해배상액 청구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2건 있어 청구액 관련 통계는 청구액이 명시된 사건(총 179건)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716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5,000만 원, 최빈값은 3천만 원이었다. 청구액이 불명확한 사건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 179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61건(34.1%)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3억 원, 최저 청구액은 2백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관련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통계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18	335	194,683,021	50,000,000	50,000,000	1	33,540,000,000
2019	272	138,495,711	62,500,000	100,000,000	1	1,300,000,000
2020	179	107,167,421	50,000,000	30,000,000	2,000,000	3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1,801만 원, 인용 최고액 2억 524만 원

매체별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집계하였을 때 총 181건의 손해배상청구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55건(30.4%)이다.

평균 인용액은 약 1,801만 원이었고 중앙값과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금액(최빈값)은 각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2억 524만 원으로, 2019년에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20년에 기각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사건은 2년 연속 최고액 사건이 되었다.⁶⁾

2020년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의 최고액과 중앙값, 최빈값이 2019년과 동일한데도 인용 평균액이 의미 있게 상승하였으나 이는 수집 사건 수와 원고 승소율이 감소하며 고액 인용 사건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통계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18	141	14,207,844	3,500,000	2,500,000	750,000	427,306,000
2019	93	14,646,238	5,000,000	5,000,000	500,000	205,240,000
2020	55	18,013,455	5,000,000	5,000,000	1,000,000	205,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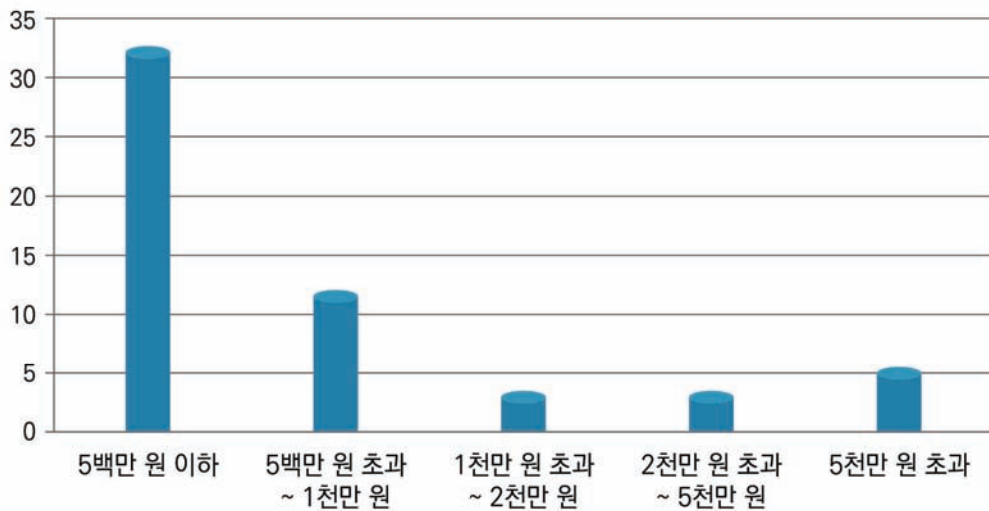
6) 언론사가 의약품의 허가사항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도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917,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백만 원 이하 58.2%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 55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32건 (58.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2건(21.8%),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3건(5.5%),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3건(5.5%), 5천만 원 초과가 5건 (9.1%)으로 나타났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31.4%

손해배상청구 181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한 결과,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1.4%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액 평균값은 1,501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표 4-4〉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159	50	31.4	15,010,000	7,000,000
명예/모욕	2	0	0.0	0	-
명예/모욕/초상권	2	1	50.0	4,000,000	4,000,000
명예/사생활침해	4	1	25.0	15,000,000	15,000,000
명예/성명권	1	0	0.0	0	-
명예/신용	1	1	100.0	100,000,000	100,000,000
명예/신용/재산권	1	1	100.0	205,240,000	205,240,000
명예/재산권	7	1	14.3	5,000,000	5,000,000
명예/초상권	2	0	0.0	0	-
명예/초상권/사생활침해	1	0	0.0	0	-
사생활침해/인격권	1	0	0.0	0	-
합 계	181	55	30.4	18,013,455	5,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손해배상 승소율 상대적으로 높아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단체(10건)의 승소율이 50%(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적인물(62건)의 승소율이 43.5%(27건)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 평균값은 고액사건의 영향으로 1억 원을 넘겼다. 그 외 종교단체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이 3,50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용 건수는 2건에 그쳤다.

공적 인물 중 '기타'로 분류된 인물들에는 공공기관장, 사회운동가, 학교장, 등단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5〉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고위공직자	13	2	15.4	12,500,000	12,500,000
	공적인물	62	27	43.5	14,796,296	5,000,000
	일반인	37	11	29.7	10,000,000	6,250,000
단 체	기 업	25	3	12.0	105,080,000	100,000,000
	일반단체	10	5	50.0	7,000,000	5,000,000
	종교단체	7	2	28.6	35,000,000	35,000,000
	공공단체	6	2	33.3	13,500,000	13,500,000
	언론사	7	1	14.3	10,000,000	10,000,000
	교육기관	7	2	28.6	7,000,000	7,000,000
	지방자치단체	1	0	0.0	0	-
	국가기관	0	0	-	-	-
	시민단체	5	0	0.0	0	-
	정 당	1	0	0.0	0	-
	합 계		181	55	30.4	18,013,455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9	4	44.4	5,250,000	4,000,000
전문인	6	1	16.7	5,000,000	5,000,000
언론인	5	3	60.0	4,333,333	5,000,000
연예인	3	3	100.0	7,666,667	10,000,000
기업인	2	0	0.0	-	-
기 타	37	16	43.2	9,843,750	4,250,000
합 계	62	27	43.5	14,796,296	5,0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승소율, 인터넷 매체 상대로 대체로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30.4%) 대비 인터넷 매체 상대 승소율(35.6%)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신문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47.4%로 높았으나 언론사닷컴에 대해서는 20.5%로 전체 승소율 대비 낮게 집계되었다. 월간지를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50%로 높았으나 사건 수가 2건에 불과하여 통계적인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2억 원이 넘는 고액 인용 사건의 영향으로 인터넷신문 인용액 평균값이 다른 매체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방 송		36	8	22.2	7,312,500	6,000,000
라 디 오		1	0	0.0	0	-
일간신문		18	4	22.2	3,250,000	3,000,000
주간신문		7	1	14.3	5,000,000	5,000,000
월 간 지		2	1	50.0	5,000,000	5,000,000
뉴스통신		3	0	0.0	0	-
불 명		13	5	38.5	4,000,000	3,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57	27	47.4	34,988,696	10,000,000
	언론사닷컴	44	9	20.5	6,611,111	5,000,000
	소 계	101	36	35.6	24,701,111	6,000,000
합 계		181	55	30.4	18,013,455	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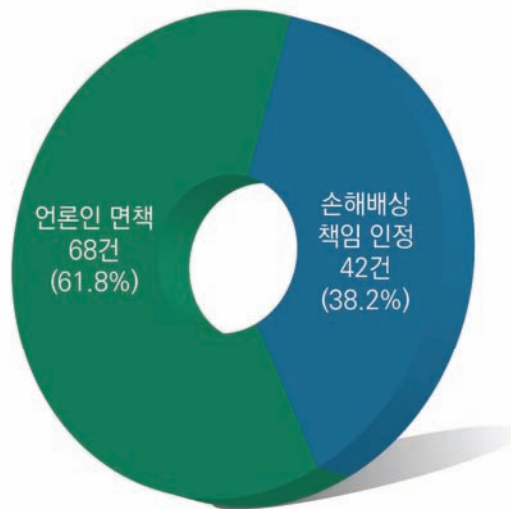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상대 승소율은 38.2%

손해배상청구 181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10건(60.8%)이었다.

이 중 청구기각, 각하 등으로 피고 언론인이 면책된 경우는 68건(61.8%)이었다.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은 38.2%로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30.4%)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400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1,801만 원

기존 보고서에서는 수집된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을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해 법원의 협조를 받아 사건번호를 수집하고 위원회 내부 사건기록을 일부 참조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법원은 조정을 거친 사건이라 해도 사건당사자가 아닌 위원회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기조에 따라 기존 통계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에 관한 항목은 집계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인용액과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을 비교하는 것은 신청인, 피신청인 양자에게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장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400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1,801만 원, 중앙값은 500만 원이었다.⁷⁾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인용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언론중재위원회	38	4,009,394	1,000,000	10,000	20,000,000
법원	61	18,013,455	5,000,000	1,000,000	205,240,000

7)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손해배상 기각의 주된 이유는 보도의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보도가 공익성·진실성·상당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관련판결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판결은 사실주장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20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총 181건 중 기각된 건은 126건이다.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51건(4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28건(22.2%),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 경우가 9건(7.1%)으로 조사되어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주된 기각 사유로 드러났다.

아래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사유에는 보도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개별적 연관성 없음), 보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성/상당성	51	40.5
공익성/진실성	9	7.1
공익성/진실성/상당성	28	22.2
진실성/상당성	1	0.8
진실성 ⁸⁾	8	6.3
당사자 불특정	5	4.0
당사자 불특정/진실성	2	1.6
사실적시 없음	8	6.3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2	1.6
기 타	12	9.5
합 계	126	100.0

8) 법리상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진실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원고가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익성 판단 없이 보도내용이 진실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28.3%

분석대상 판결에 포함된 421건의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건은 145건이었다.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총 41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28.3%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20건이었고 대부분 반론보도, 손해배상 또는 기사삭제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1〉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정정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18	182	79	43.4
2019	165	62	37.6
2020	145	41	28.3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104건)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각하된 1건을 제외한 103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70건(68.0%)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건이 9건(8.7%), 진실성과 사실주장이 아님을 기각사유로 든 경우가 16건(15.5%) 등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문에 나타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통계화하였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70	68.0
진실성/개별적 연관성 없음	3	2.9
진실성/사실주장이아님	16	15.5
개별적 연관성 없음	3	2.9
사실주장이아님	9	8.7
기 타	2	1.9
합 계	103	100.0

주요 기각사유에 대하여 실제 판결문에 사용된 대표적인 문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각사유	판결문 내용
진실성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도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적 연관성 없음	“...재판부의 증인 채택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의 명예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원고의 법적·사실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과 단체는 법적으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단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단체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주장이아님	“이 사건 보도는...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암시한 것이 아니라 N등의 증언을 의혹 제기 차원에서 소개한 것에 그쳤다고 보일 뿐이다.” “이 부분 보도 내용은...의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이런 음료를 복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피고 B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25.0%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56건 중 원고 승소 사건은 14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25.0%로 예년에 비해 저조하였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5건이었으며 대부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병행하였다.

〈표 5-3〉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반론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18	38	20	52.6
2019	54	25	46.3
2020	56	14	25.0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론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56건 중 각하 3건을 제외하면 기각된 사건은 39건이었다. 원고가 청구한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법원은 보도내용이 사실주장이 아닌 경우, 청구하는 반론이 보도의 주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경우, 이미 원 보도나 후속보도에 반론내용이 충분히 포함된 경우(기반론행사) 등을 기각사유로 판단하였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기반론행사	4	10.3
사실에 반함	14	35.9
사실에 반함/개별적 연관성 부정	1	2.5
사실에 반함/사실주장이님	4	10.3
사실에 반함/지엽말단	4	10.3
사실주장이님	8	20.5
사실주장이님/지엽말단	1	2.5
기 타	3	7.7
합 계	39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4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6건이어서 청구별로 계산한 인용건수는 총 55건이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3건, 주간신문 3건, 방송 10건, 인터넷 매체 37건 등이었고,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 41건, 반론보도 14건이었다. 추후보도청구 2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5-5〉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3	0	0	3
주간신문	1	2	0	3
월간지	0	0	0	0
방송	6	4	0	10
라디오	1	0	0	1
뉴스통신	0	0	0	0
인터넷 매체	29	8	0	37
불명	1	0	0	1
합계	41	14	0	55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인용된 49건에 대해 매체별 보도 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5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3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22건으로 나타났다.

기존 통계에서는 원보도와 같은 위치(프로그램)에 보도를 명하였는지를 따로 통계화하였으나, 매체에 따라 원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져 통계에서 배제하였다.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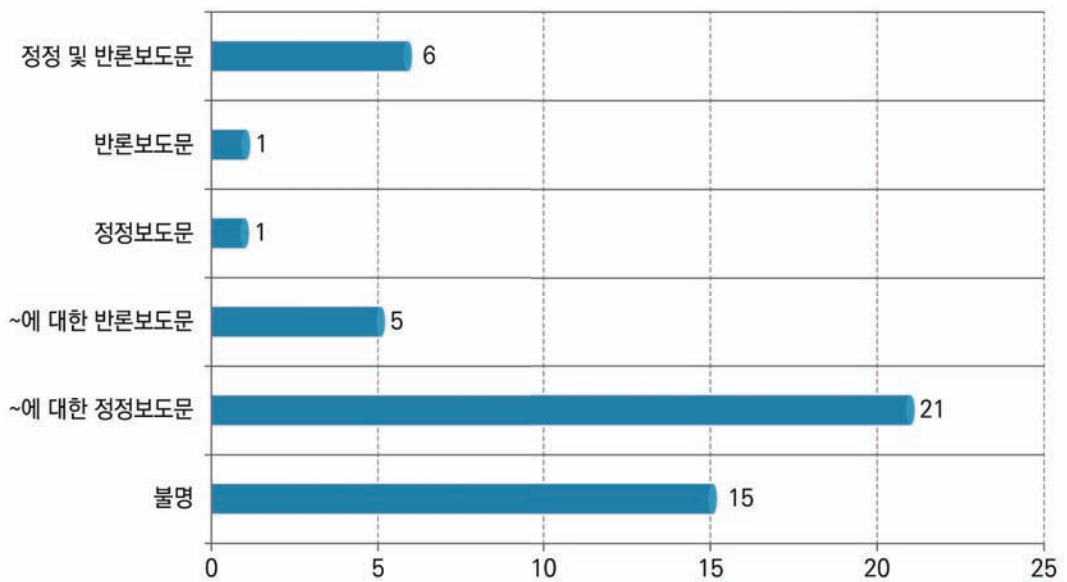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5	62.5
	1면 외	3	37.5
합 계		8	100.0
방송·라디오	첫머리	3	33.3
	프로그램 도중	5	55.6
	후 반	1	11.1
합 계		9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22	68.8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10	31.2
합 계		32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원 보도의 제목 또는 핵심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제목 형식이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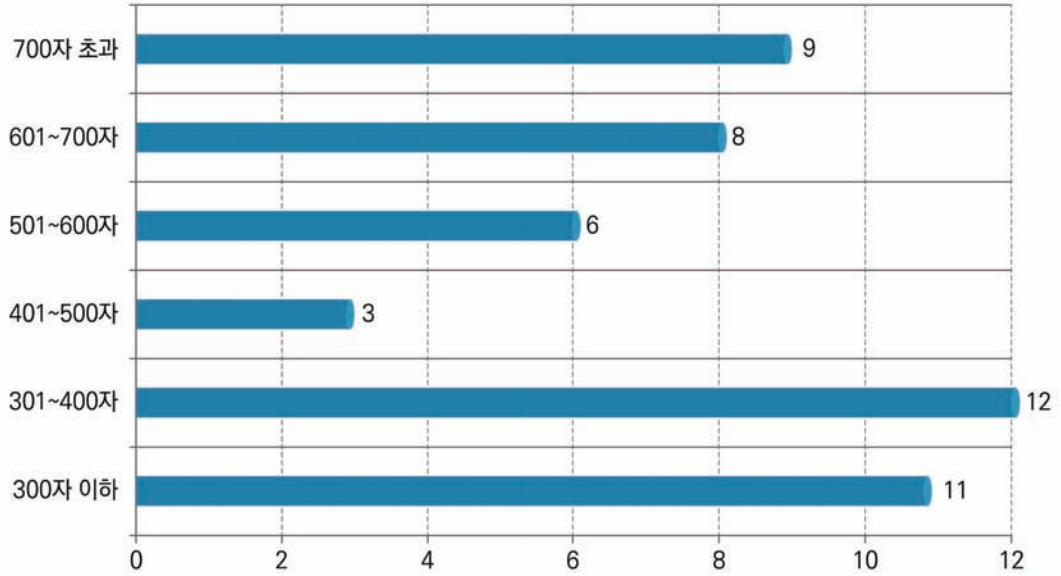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했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26건(53.1%)으로 집계되었다. 법원이 공개하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도문의 제목 자체를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불명’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늘어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 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1자~400자가 12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0자 이하 11건(22.4%), 501자~600자가 6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분석 판결 목록(민사 164건)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18가단221949	2020-01-07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2	2018가합1849	2020-01-08	서울동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	2018가합1940	2020-01-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4	2018가합39754	2020-01-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5	2018가합40938	2020-01-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6	2019나67760	2020-01-08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7	2008가합108156	2020-01-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인용
8	2019가합107280	2020-01-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9	2018가단5100406	2020-01-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0	2019나26396	2020-01-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1	2019나2023440	2020-01-1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2	2019가합30525	2020-01-15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3	2019가합534190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4	2016가합579796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	2018가합7707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6	2018가합587715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	2018가합515564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8	2019가합531023	2020-01-15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9	2019다268849	2020-01-16	대법	3심	정정/손배	인용
20	2018가합1743	2020-0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1	2019가합103981 2019가합112473	2020-01-1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2	2019가합114097	2020-01-16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3	2019가합114196	2020-01-16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4	2018가합113738	2020-01-1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5	2019가합24982	2020-01-19	서울북부지법	1심	정정/반론	각하
26	2019나2028445	2020-01-22	서울고법	2심	보도금지/손배	인용
27	2019가합35223	2020-01-2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28	2018가합587807	2020-01-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9	2019가합506096	2020-01-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0	2018나13165	2020-01-22	제주지법	1심	손배	기각
31	2018가합11931	2020-01-30	광주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32	2019다279917	2020-01-30	대법	3심	손배	인용
33	2019가합105857	2020-01-3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4	2019가합2857	2020-01-30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5	2019가단231575	2020-02-04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6	2019가단11257	2020-02-04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37	2018나2049544	2020-02-07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8	2018가합111343	2020-02-11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9	2018가단124097	2020-02-12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0	2019가합1107	2020-02-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1	2019다21392	2020-02-13	대법	3심	정정/손배	인용
42	2019다281842	2020-02-13	대법	3심	손배	인용
43	2019다280061	2020-02-13	대법	3심	정정/손배	기각
44	2019가소338342	2020-02-18	수원지법	1심	손배	인용
45	2018가합41603	2020-02-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46	2018가합41863	2020-02-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47	2018가합41900	2020-02-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8	2018가합41948	2020-02-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9	2018가합41740	2020-02-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50	2019가합527536	2020-02-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1	2019다291863	2020-02-27	대법	3심	손배	기각
52	2019다292835	2020-02-27	대법	3심	손배	기각
53	2019나2031472	2020-03-13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54	2019가합2134	2020-03-18	수원지법	1심	손배	인용
55	2018가합573457	2020-03-2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56	2019가합10922	2020-03-26	대구지법	1심	손배	기각
57	2019나2019458	2020-03-27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58	2019나2036811	2020-04-1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59	2019나2039261	2020-04-1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60	2019가합113933	2020-04-16	서울남부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61	2019가합100160	2020-04-17	안양지원	1심	기사삭제	기각
62	2019가단231582	2020-04-2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63	2019가합505567	2020-04-22	서울중앙지법	1심	보도게재/손배	기각
64	2019가합539881	2020-04-22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65	2019나34137	2020-04-22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66	2019나41074	2020-04-22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67	2019가소5470	2020-04-27	영동지원(옥천)	1심	정정/손배	인용
68	2020다203282	2020-04-29	대법	3심	정정/손배	기각
69	2019나2056372	2020-05-07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70	2018가합112421	2020-05-0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71	2018가합590223	2020-05-1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인용
72	2019가합206111	2020-05-14	대구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73	2019다233225	2020-05-14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74	2019가소2466238	2020-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75	2018가합587753	2020-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76	2019나2051100 2019나2051117	2020-05-22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77	2019가합33227	2020-05-2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8	2019가합35605	2020-05-27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79	2019가합37250	2020-05-27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80	2020나2006311	2020-05-29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81	2019가단247518	2020-06-0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82	2019가합104854	2020-06-04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83	2019가단5086606	2020-06-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84	2019가합523541	2020-06-1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85	2019가합104127	2020-06-11	서울동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86	2017나24549	2020-06-11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87	2019가합101376	2020-06-12	천안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88	2019나2044157	2020-06-1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89	2018가합35554	2020-06-1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90	200나2006052	2020-06-1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91	2019가합41766	2020-06-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92	2019나13943	2020-06-25	부산고법(창원)	2심	정정/손배	인용
93	2019나2041783	2020-06-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4	2019가단241700	2020-07-07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95	2019가합37809	2020-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96	2019가합35834	2020-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7	2019가소2661156	2020-07-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98	2019가합528515	2020-07-1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9	2019가합554446	2020-07-15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00	2019나81584	2020-07-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1	2018가단256379	2020-07-21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02	2019가합4835	2020-07-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103	2019가합582335(본소) 2019가합538570(반소)	2020-07-22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04	2020다225817	2020-07-23	대법	3심	정정	인용
105	2019가합113063	2020-07-23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06	2019나2043482	2020-08-1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07	2019가합38697	2020-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인용
108	2020다227233	2020-08-13	대법	3심	정정/손배	인용
109	2018나68566	2020-08-13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110	2018가단44334	2020-08-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11	2018가합35721	2020-08-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12	2019가합6633 2019가합6640(병합) 2019가합6657(병합) 2019가합6664(병합) 2019가합6671(병합)	2020-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13	2019가단247525	2020-08-25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14	2017가합2007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15	2017가합2014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16	2017가합2021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17	2017가합2038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118	2017가합2045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119	2017가합2052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20	2017가합2069	2020-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21	2018가단5148170	2020-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22	2018가단5148453	2020-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23	2019나83351	2020-08-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24	2019가합20088	2020-08-27	수원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125	2019가합1139 2019가합1146(병합)	2020-09-03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26	2019가합18405	2020-09-03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27	2020가단220839	2020-09-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28	2019가단5247746	2020-09-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29	2019가소2606579	2020-09-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0	2019가합524445	2020-09-0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31	2020가합1887	2020-09-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2	2019가합109217	2020-09-1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33	2016가합543094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34	2019가합522579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135	2019가합532002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136	2020가단205411 2020가단243086	2020-10-0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37	2020가합1900 2020가합1917	2020-10-1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38	2019나2054307	2020-10-16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39	2020나2003695	2020-10-1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40	2020나2004674	2020-10-16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141	2019가단5256542	2020-10-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약정금)	기각
142	2019가합2303	2020-10-2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3	2020가합30354	2020-10-2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44	2019가합536240	2020-10-2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5	2020가합517849	2020-10-2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146	2020가합125 2020가합132	2020-10-2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7	2020나2005714	2020-10-3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기각
148	2019가합1282	2020-11-11	서울서부지법	1심	추후/손배	기각
149	2019가합1305	2020-11-11	서울서부지법	1심	추후/손배	기각
150	2020가합555032	2020-11-11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151	2020가합100421	2020-11-1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52	2020나22316	2020-11-18	대구고법	2심	정정	기각
153	2020가합36048	2020-11-1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54	2020가합566032	2020-11-1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55	2020나2007710	2020-11-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56	2020나14112	2020-11-19	수원고법	2심	기사삭제	기각
157	2019나2040926	2020-11-27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158	2020나2005318	2020-11-2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59	2018가합11225	2020-12-01	목포지원	1심	정정	인용
160	2020가합205367	2020-12-03	대구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161	2019나4319	2020-12-088	대전지법	2심	손배	인용
162	2020가합558734	2020-12-1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기사삭제/손배	기각
163	2019가합114363	2020-12-1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64	2019나63567	2020-12-17	창원지법	2심	손배	인용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제1장

손해배상청구

이 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리나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결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31582 판결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배우인 원고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는데도 의료진 없이 방치되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식당측은 원고와 합의하였고 병원도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병원측이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식당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과거에 있었던 해당 병원 입원실 폐쇄도 원고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가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마치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 보도들은 별도로 진행되던 형사재판 1심 진행중에 작성·게시되어 강제추행 피해자인 원고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참고자료로 제출되었고, 피고는 이 보도들이 공익적 목적의 사실보도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피고의 지인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고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사의 기재는 단지 부정확한 것을 넘어 원고가 문이 잠긴 병원에 혼자 갇혀있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인 점,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원고가 합의금을 받은 것은 원만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합의금을 갈취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가 관련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사	건	2019가단23158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1.
			2020.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영화 'C', 'D', 드라마 'E'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고, 피고는 2016.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6. 11. 퇴사한 기자이다.

나. 피고 작성 기사와 관련된 경위 사실

- (1) 원고는 2014. 12. 13. 서울 구로구 소재 G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국수와 주먹밥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복통,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식당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1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였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고사실을 통보받은 이 사건 식당의 업주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15. 1. 30.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18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 (3) 원고는 2014. 12. 15.부터 H 정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식당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피해자가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대부분이 퇴근하였고, 남아있던 간호사는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 사이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였는데 원고는 간호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문이 모두 잠겨있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직접 수액주사를 뽑은 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원고를 I병원으로 호송하였다(이하 이러한 사고를 '이 사건 병원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식당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병원 측은 2014. 12. 16. 이 사건 병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그 소속 의사와 직원을 원고가 입원한 I병원으로 보내어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 (5) 원고의 소속회사는 2015. 1. 8. 원고의 매니저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원고의 위자료와 소속회사의 휴업손해를 명시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이 사건 병원 사고

로 출연이 불발된 영화 및 광고의 명단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매니저는 이에 병원비와 약값, 택시비 합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1. 9.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이 명백하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 (6) 원고나 원고의 소속회사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없다.
- (7) 이 사건 병원은 과거 입원실을 운영하다가 폐쇄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고 그 시기도 이 사건 병원 사고 전이었다.

다. 피고의 2016. 7. 29.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라 한다) 보도

피고는 2016. 7. 29. 인터넷신문 F 홈페이지 (J)의 메인화면에 『K』라는 제목으로, 『L 체인점에서 배탈이 났다며 식약청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 보험금 218만 5,000원을 수령했던 여배우가 배탈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항의해 병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지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중략)....A양은 2014년 12월 14일 금요일 식당에서 국수와 주먹밥을 먹고 주말을 보낸 후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자신의 집 부근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 ‘배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그렇게 많이 아프면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보라’고 하였으나 A양은 다음 날 늦은 시간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병원에서 수액(링거)를 투여받던 중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간호사가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B양은 ‘수액에 피가 역류한다’며 본인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날 이후 1월 8~9일경 A양은 병원 측에 자신은 피를 보면 혼절을 하는데 수액(링거) 주사바늘을 제때 뽑아주지 않아 많이 놀랐으며 그동안 영화촬영과 광고 재계약 등을 하지 못하였으니 해당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보상하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병원 측은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원을 내주고 B양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간호사들이 퇴근했다고 단정 지으며 본인이 혼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병원 취재 결과 간호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으며 ‘혼절’했다는 A양이 어떻게 직접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한편 F의 보도와 관련, 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유사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다.

라. 피고의 2016. 8. 1.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라 한다) 보도

피고는 2016. 8. 1.경 인터넷신문 F 홈페이지 (J) 메인화면에 『M』라는 제목으로 『N 새 아침드라마 ‘O’에 L 식당 관련 여배우 A씨가 캐스팅 된 것이 알려져 관심을 끄는 가운데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과정에서 합의금 총 518만 500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중략)...본지 취재결과 16일 여배우 A씨가 수액 치료받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수액치료가 끝난 A씨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가 역류한다'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다...(중략)...2015. 1. 9.(금) 여배우 A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350만원에 대해 병원 측은 300만원으로 최종합의를 했고, 또 A씨는 자신의 복통에 대한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해당병원은 입원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중략)....』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하면서 별지1와 같은 첨부자료를 함께 게시하였다.

마. 피고의 진정서 제출,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및 증언

(1) 원고는 피고의 지인인 P와 배우로서 'Q'라는 제목의 영화에 부부로 캐스팅되어, 2015. 4. 16. 24:00경 위 영화 중 P가 강제로 원고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다. P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2015. 12. 22. 위 장면 촬영 과정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31), 이 사건 각 기사는 P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 중 작성·게시되었고, 원고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참고자료로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 제출되기도 하였다(P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 선고 2015고합331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및 무고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4101 판결), 대법원은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가 2016. 8. 11.경 금천경찰서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보험회사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 바 있고, 이후 2016. 11.경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31 사건에 별지3 기재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7. 6. 2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4101호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F의 다른 기자 등과 함께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8. 5. 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12호). 이에 피고 등과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4.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884)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 (1) '명예'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명예훼손'이란 위와 같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증오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비방·경멸·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할 만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인지 는 그 사회의 합리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 (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등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의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간호사가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B양은 본인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단지 부정확한 것을 넘어 원고가 문이 잠긴 병원에 혼자 갇혀있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병원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별다른 마찰이나 불만 없이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보상하라는 피해자의 돈 요구에 대하여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 원을 내주고 합의하였다'고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은 원만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

이고 원고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합의금을 갈취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에서 이 사건 병원 사고에 대하여 기재한 후 곧바로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입원실이 폐쇄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병원 사고와 입원실 폐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한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이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내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마치 경찰에서 이미 유사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F 홈페이지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게 하였으며, 관련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갑13, 16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의 경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① 피고는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P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로지 원고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다음 2년이나 지난 일들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사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원고는 관련 성범죄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 ②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다음 원고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는바, 특정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보도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다.
- ③ 이 사건과 같은 ‘가짜 인터넷뉴스’가 급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어 사후에 그로 인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곤란하다(언론인인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F는 인터넷 언론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무렵 다른 언론사들이 원고에 관하여 후속보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⑤ 원고는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배우로서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이른바 '갑질 배우'로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직업적·사회적 활동이나 수입 등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로부터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였다면 서 엄벌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불법행위일인 2016. 7. 29.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합505567 판결⁹⁾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로 보도된 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여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월간지를 간행하는 피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원고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는 피고 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지면에 사실을 정정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할 것과 더불어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일부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보도 당시 원고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하였을 것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보도내용의 허위성 판단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L 과장을 압박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부분과 ‘원고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이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협회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피고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공표하고 언론사에 배포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원고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L 과장의 직속상관으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관한 백서에는 L이 상사인 ‘국·실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던 시점에 특정 도사와 이를 출판한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정치적 이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L의 상급자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고 의심할 여지

9) 원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피고 사단법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건으로 엄밀히 말하면 피고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나, 해당 성명서가 타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보도게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언론 관계판결로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가 충분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고, 성명서 공표 당시에는 백서가 발간되지 않아 원고들이 징계권고대상과 수사의뢰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혼동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일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50556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사단법인 B 2. C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사단법인 B는,
 -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발행되는 ‘T’의 뉴스 부문 1면에 별지1 기재 내용을 제목은 24급 굴림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본문은 12급 바탕체 활자(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별지1 기재 내용을 피고 사단법인 B의 인터넷

- 넷 홈페이지(D)의 ‘공지사항’부분에 최근의 번호로 제목은 20급 굴림체 활자로, 그 아래 본문은 12급 바탕체 활자로 게재하고, ‘보도자료’부분의 2019. 1. 9.자 ‘E’ 제목의 본문 상단에 제목은 20급 굴림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본문은 12급 바탕체 활자로 게재하며, 별지1 기재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위 성명서를 배포했던 언론사에 배포하라.
3. 피고 사단법인 B가 제2항의 기간 안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국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2016. 3. 1.부터 2016. 11. 1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F(G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아래 다.항의 성명서가 발표된 2019. 1. 7.경에는 H 사무처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국내 출판인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출판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691개의 출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는 피고 협회 및 출판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이다.

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 1) 전(前) 대통령 K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념을 가졌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라 한다)’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한다)이 인정되어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판결)].¹⁰⁾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가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0)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판결)을 거쳐 현재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이 진행 중인데, 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고 있다.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9. 2. 27.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을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가 발간되었다.

- 3) 위 백서에서는, L이 2014. 10. 16.부터 2016. 9. 27.까지 문화체육관광부 G국 R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비영리법인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정부 지원 사업(N 사업, O 사업, P, Q 사업 등)을 감독하면서 K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성명서 배포 및 게시

- 1) 피고 C는 2019. 1. 7.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L 전 문화체육관광부 R과 과장을 압박하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진두지휘한 A 전 문화체육관광부 G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H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수사의뢰 대상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셀프 수습과정에서 이들은 전직 예우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임기를 끝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S 등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2019. 1. 9.경 위 성명서를 피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협회소식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2) S 소속 기자 T은 2019. 1. 7.경 위 성명서를 인용하여 ‘L 과장을 압박하여 진두지휘한 A 전 문화체육관광부 G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H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S 인터넷 홈페이지 및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라. 피고 C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2019. 1. 31.경 ‘원고가 L 과장을 압박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없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도 아니었으며, 전직 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C를 검찰에 고소하였다.
- 2) 위 고소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 4. 15. ‘원고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고 C는 이를 규탄할만한 위치에 있으며, 이 사건 성명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2019. 5. 9.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9 고불항제5685호), 위 항고는 2019. 7. 31. 기각되었고,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20), 2019. 11.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지난 K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F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R과 L 과장을 압박하거나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없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도 아니었으며, 전직 예우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성명서를 공표하고, 피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하였다.
- 2)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고 협회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글을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원고는 출판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L의 직속상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L을 '압박'하였다거나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가 L의 상급자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 중 '수사의뢰대상이었다'는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U 문화체육관광부 V실장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표한 이 사건 성명서는 모두 사실이거나 정당한 의혹제기이다.
- 2) 피고 협회는 우리나라 출판계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피고 C는 그 대표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성명서를 공표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L 과장을 압박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부분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원고가 L의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1.부터 2016.

9. 27.까지 L의 직속상관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L 과장을 압박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부분은, 그 사용된 어휘(‘압박’, ‘진두지휘’)의 통상적인 의미 및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원고가 L의 상급자라거나 상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건대, 을 제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은 2014. 10. 16.부터 2016. 9. 27.까지 문화체육관광부 R과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M 소관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출판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 원고는 2016. 3. 1.부터 2016. 9. 27.까지 L의 직속상관인 문화체육관광부 F으로 재직 한 사실, L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과 장차관에게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아직 L이 R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6. 8. 1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도서 및 이를 출판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L의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수준을 넘어 L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출판 분야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L 과장을 압박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① 원고가 L의 상관으로 부임하게 된 시기는 이미 L에 의하여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이 시작되고 나서도 약 1년 5개월 가량이 지난 후인 점, 증인 L 역시 원고가 구체적인 사업에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L에 의하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L을 압박하였다거나 위 업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증인 L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출판 분야의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P’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N’ 사업은 원고의 부임 시기상 원고와 관련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원고가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압박하거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진두지휘한 사실은 부정하고 있다. 또한 위 증인은 자신이 과장으로 재직 한 기간 동안에는 R과의 업무는 자신에게 맡겨 놓는 편이었고 특별히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은 자신의 책임을 그 상급자인 원고에게 전가할 유인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 ③ W는 2013. 12. 13.부터 2016 4. 3.까지 문화체육관광부 R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L과

함께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W의 진술에 의하면, 2014. 2.경 주간지 X에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일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가 당시 G국장 Y, R과장 Z 및 W에게 위 기사를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L이 R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W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G국장이었던 Y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백서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L의 문화체육관광부 내 상급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이었다’는 부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징계 권고는 AA 관련 사건으로 L에 의하여 실행된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고,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이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성명서에서 ‘수사의뢰대상’이란 이 사건 성명서에서 원고와 같이 언급되고 있는 U 전 문화체육관광부 V실장만을 가리키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명서의 해당 부분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수사의뢰대상이었다’라는 부분이 원고에 대한 내용 바로 뒤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위 ‘수사의뢰대상’을 ‘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바,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이 부분 표현을 접한다면 위 ‘수사의뢰대상’에는 U뿐만 아니라 원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전직 예우를 받았다’는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 F을 지낸 후 2016. 11. BB실 CC정책관을 거쳐 2017년 경 국무총리 소속 H 사무처장으로 파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전직 예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인사이동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L 과장을 압박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하였다’는

부분과 ‘원고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이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추인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협회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성명서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갑 제2, 3, 7, 8, 16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공표하고 언론사에 배포하였다고 판단된다.

- ① 지난 K 정부는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정부를 비판한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출판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은 큰 피해를 입었고, 국내 대표적인 출판회사 단체인 피고 협회와 그 대표인 피고 C는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 ② 2018. 9.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규명과 처벌에 소극적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 사건 성명서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미흡한 후속조치를 비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성명서를 공표하기 전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의 실무자인 L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성명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원고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들이 이 사건 성명서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 갑 제1, 9호증, 을 제2, 4,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G국의 구체적인 업무실태를 모르는 외부인인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L의 직속상급자로서 그를 압박하여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상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① 원고는 출판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R과 과장 L의 직속 상관으로 재직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L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백서에는 L이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인 ‘국·실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 ② 원고는 2016. 8. 17.경 특정 도서와 이를 출판한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당시는 원고가 우리나라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F로 재직 중이었던 때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L의 상급자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 ③ 이 사건 성명서가 공표되기 전부터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책임 규명 및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책임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 ④ 비록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DD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고, 이 사건 성명서 공표 당시에는 아직 백서가 정식 발간되지 않아서 피고들로서는 결과보고서상 징계권고대상과 수사의뢰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양자를 혼동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 4)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중 일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성명서 공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합539881 판결

취재내용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상당성이 부정되면 공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R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언론사다. 피고는 원고가 R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한다거나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하고, 원고가 직접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사실관계 취재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성이 부정된다며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의 일부 삭제를 명하였다.

[판결요지]

□ 보도내용의 허위성 판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구체적인 액수의 상납금을 요구하였다거나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한다는 사실은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취재원에게 인용하고자 하는 발언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 원고측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확인이나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점, 제보자 인터뷰 내용의 경우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익성 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53988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F	
피	고	1. 주식회사 G 2. H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25.
			2020. 4.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G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G 사이트(J)에 2019. 5. 22.에 노출된 피고 H 작성의 『K』 제목의 기사에서 본문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L, M, O, P, Q에 대하여 위 부분의 삭제를 요청하라.
 - 나. 만일 피고 주식회사 G이 가.항 기재 기간 내에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G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L, M, O, P, Q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들이 위 기사삭제

및 삭제요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의무이행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 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7년부터 ‘R 선발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주간지 ‘I’의 발행 및 I 인터넷신문 사이트(J)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H는 피고 G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H는 『‘63회 F R 대회’ 잡음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수정 전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2019. 5. 22. 위 기사를 ‘G’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수정 전 기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순번에 따라 ‘○ 부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받고 ③ 부분 중 밑줄 친 굵은 글씨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기사(이하 ‘이 사건 수정 후 기사’라 하고, 수정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기사’라 통칭한다)를 게재하였다.

①	“옛날만큼은 아니라 해도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장난 좀 치잖아요. 주최 측에서 본선 진출한 후보자들 부모님 연락처 알아내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요. 우리 학원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선에서는 결국 본사 연락이 온다고 했죠. 엄두에 두세요.” (강남 N스퍼치 학원 상담실장)
②	“될 만한 애들은 미리 F 측에서 따로 부르지. ‘이번에 진 한번 해 볼 꺼야?’라고 접근해서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없으면 스폰서를 붙여줘. 2017년에는 지역 대회에서 A씨한테 성형외과 원장을 스폰서로 붙여줬어. 그래서 됐지. 그런데 또 그런 소문이 나면 본선에서는 순위권 안에 못 들어. 돈을 준비하는 게 깔끔해.” (대구 S한복집 대표)
③	“어디 학원, 미용실 원장님, 한복집 사장님 등이 어디 브랜드 구두, 드레스, 메이크업 제품 사라고 하는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꼬시는 사람 있으면 주최 측에 연락 주세요. 액세서리 등을 사서 당선된 분은 아무도 없죠. 혹시 몰라요. 그 돈을 저희한테 주면 당선되셨을지도...하하하. ” (대회 관계자)
④	최근엔 F 측에 브로커 역할을 하려던 한복집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과거엔 주최 측 심사 비리가 드러난 적도 있다. 지난해 R 지역 예선에 출전한 B씨는 T 대구 S한복집 대표에게 “지역 진선미든 본선 진선미든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 예선 출전을 준비하면서 T씨와 연락이 소원해졌다.
⑤	F 주최 측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일도 있었다. 2013년 10월 20일, ‘2012년 R 선발대회’ 본선 참가자 어머니 V는 6월 29일 대회를 주최한 F 사업국 E팀장으로부터 “수상확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두 명만 사면 된다. 한 명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R 후보자들에게 ○ 구체적인 액수의 상납금을 요구한다(① 부분), ○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한다(② 부분), ○ 부정한 금원을 받으면 당선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③ 부분), ○ 원고가 부정당선을 위한 뇌물 수수 브로커를 두고 있으며(④ 부분), ○ 원고 측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다(④, ⑤ 부분)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를 통하여 언론사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사의 삭제 및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원고가 문제 삼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예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사에 실제로 적시된 사실은 대부분 진실에 합치하고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기사 작성의 목적 역시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구체적 사실적시 여부

가) ①, ② 부분 관련 주장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② 부분은 R 후보자 B가 강남 N스피치 학원 상담실장 및 대구 S한복집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본선에 진출한 R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상납금을 요구하고,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스피치 학원 상담실장 및 한복집 대표가 'F 측에서 상납금 내지는 성매매를 요구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참가자들을 공갈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 인용한 스피치 학원 상담실장 및 한복집 대표의 발언 자체에 'F', '본사', '주최 측'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소재목은 「W」인 점, 뒤이어 주최 측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인용된 스피치 학원 상담실장 및 한복집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인용된 스피치 학원 상담실장 및 한복집 대표의 발언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③, ④ 부분 관련 주장

③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대회 관계자가 관련 업계에서 제품구매를 강요하더라도 당선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에 주의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그 돈을 주최 측에 지급하면 당선될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R 후보자들로부터 부정금원을 받으면 당선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④ 부분을 보건대, 위 부분은 원고 측에 브로커 역할을 하려던 한복집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한복집 대표가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정당선을 위한 뇌물 수수 브로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기사에서는 ① 부분을 통하여 '원고가 본선에 진출한 R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상납금을 요구하였다(이하 '㉠ 사실'이라 한다)', ② 부분을 통하여 '원고가 R 후보자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한다(이하 '㉡ 사실'이라 한다)', ④, ⑤ 부분을 통하여 '원고 측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다(이하 '㉢ 사실'이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적시사실의 허위성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

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 ㉡ 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 ㉡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겠으나, 이는 원고가 본선에 진출한 R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상대자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X, 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 ㉡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소명자료 역시 그 신빙성이 탄핵되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이 ㉠ 사실을 적시하며 근거로 삼은 강남 N스피치 학원 상담내용(을 제3호증의 1, 2)을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상담실장이라고 칭한 Y이 R 후보자 B의 모친에게 “그게 요즘은 이게 조금 덜 하다고는 하는데 또 뭐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고, 뭐 미용실은 어떻게 연계돼 있고 그게 또 조금씩 달라서. 그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치잖아요.”, “부모님들 연락처 알아내가지고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선 들어가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 나간 거 들어보면 본선에서는 이제 따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국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Y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실제로 원고가 R 후보자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① 부분에 “주최 측”과 “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납금을 요구하는 주체가 원고임을 명시하였으나,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는 주체가 원고라는 언급

은 없고, Y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계 전반에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하였을 뿐 원고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 ㉠ 사실은 대구 S한복집 대표가 발언하는 형식을 통하여 적시되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이 R 후보자 B의 모친의 전언을 들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대구 S한복집 대표가 그와 같이 발언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 S한복집 대표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제4호증)을 보더라도 대구 S한복집 대표는 원고의 대표에게 피해자의 딸의 미인대회 수상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성매매 알선 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다) ㉡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실제 2012년경 원고의 사업국 직원이 본선 진출자의 어머니에게 회식비를 건네받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인 점, ○ 원고는 개인의 일탈을 법인 전체의 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속 직원이 재직 당시 그와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을 ‘원고 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범위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이 적시한 ㉠, ㉡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 ㉡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H은 강남 N스피치 학원 상담실장에게 인용하고자 하는 발언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 H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이전에 원고 측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사는 신속성을 요하는 속보 기사가 아니라 63회 R 대회를 약 2개월 앞두고 작성된 기획 기사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확인이나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특히 이 사건 기사의 제보자인 R 후보자 B 및 B의 모친의 인터뷰 내용의 경우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 ㉡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 ㉡ 적시행위는 공익성 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미인대회와 관련하여 비리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대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3)의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측의 금전 내지 성상납 요구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작하여 마치 원고 개최의 미인대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5. 2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사삭제청구 및 기사삭제요청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

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 G에게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 사실은 본문 제1행부터 제6행까지 강남 N스피치 학원 상담실장의 발언을 통하여, ㉡ 사실은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대구 S한복집 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적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 후 기사 전체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만을 삭제하더라도 피고 G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중지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 G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19. 5. 22.에 노출된 피고 H 작성의 『K』제목의 기사에서 본문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L, M, O, P, Q에 대하여 위 부분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현재까지의 분쟁상황을 보면, 피고 G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G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G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 삭제 및 삭제요청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1일 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2056372 판결(환송후심)

특정 단체를 중복세력으로 지칭하거나 내부에 중복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라도 원고가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¹¹⁾

방송사인 피고가 방영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원고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와 같은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으며 원고를 중복세력의 선전·선동수단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 원고가 중복세력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카테고리 포함된다는 내용, 원고를 중복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으나 원고 내부에 중복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발언하였다. 해당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중복세력 5인방>, <중복 선동하는 언론 'A'?> 라는 자막이 띄워져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적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보도내용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하였는데,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판결).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청구기각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 판결).

환송후심을 심리한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중복이라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단체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중복'이라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중복'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복'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

11) 이 사건 사실관계 작성에는 해당 판결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 판결문을 참조하였다.

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언론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관심 사안에 관하여 오랜 기간 꾸준히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적 토론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인 원고의 활동, 원고가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피고 등이 행한 발언의 맥락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모욕적인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

피고 등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원고가 그동안 펼쳐 온 각종 활동에 근거하여 원고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언론시민단체인 원고와 관련한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가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중복'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위 표현에 대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어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가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판결문

사 건	2019나2056372 정정보도 등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판결
환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 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하는 'D' 프로그램 시작 첫 화면 상단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 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일 이내에 B 홈페이지(E)와 'D' 홈페이지(F)의 각 첫 화면 상단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시하며,
 - 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2013. 5. 6.자 'D'의 원본 방송프로

그럼 중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에서 허위보도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방송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전 제3자에게 위 방송프로그램이 계약상 배포되었을 경우 그 제3자에게 정정보도사실을 통지하고, 정정보도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

-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제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를 중복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원고의 핵심인사를 중복인사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발언을 자막으로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중복단체가 아니고, 원고 내부에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의 체계모니를 장악한 중복인사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중복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와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삭제, 제3자에게의 정정보도 사실 통지 및 1일 10,000,000원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과거 행적에 근거하여 원고가 중복성향의 단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을 뿐, 원고를 중복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중복성향인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피고 C가 원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중복성향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C가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자신 또는 G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고 B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의 자막도 피고 C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가 중복세력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가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공적 단체인 원고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 B는 당시 사회적 관심사였던 중복을 주제로 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고, 피고 C 등이 출연하여 원고의 행보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중복’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중복’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범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 35, 38 내지 45호증, 을나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C 등이 한 발언은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비록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될 무렵 I가 ‘중북’의 의미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북’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 ② 원고는 언론감시활동 강화 및 시민언론운동의 다양한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하여 온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로서, 언론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관심 사안에 관하여 오랜 기간 꾸준히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적 토론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 행보 등에 대하여 언론이나 타인으로부터 공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이다. 따라서 원고의 활동, 원고가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피고 C 등이 행한 발언의 맥락과 그 취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 C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 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국 피고 C 등의 이 사건 방송에서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그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관계가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등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C 등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원고가 그동안 펼쳐 온 각종 활동에 근거하여 원고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언론시민단체인 원고와 관련한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가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 C 등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중복세력의 선전 선동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고 원고에 속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복인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위 표현에 대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어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피고 C 등은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서 더 나아가 '북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고, 김씨 왕조를 지지한다', '세뇌를 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 권력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등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가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로 언론민주화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사건에 대해 성명, 논평, 기자회견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로서, 꾸준히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적 토론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점에

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태도, 행보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언론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논평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이를 반박·해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3) 결국 피고 C 등의 이 사건 방송에서의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등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원고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뿐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5086606 판결

특정인을 ‘사기꾼’으로 표현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면서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며 수사적인 과장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과거 의사 사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자문관,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을 사칭하며 전국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그와 유사한 자(사기꾼)들이 상당수 활동중이니 주의를 요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을 사용하여 강연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재원이 원고가 과거 의사를 사칭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모 지자체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하고 원고를 사기꾼으로 표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을 사칭하여 강연활동을 하였다거나, 홍보대행사 대표가 “원고는 과거 E대 출신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과거 모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취재 중 원고가 자신이 현재 모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자문관 중 원고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를 ‘사기꾼’으로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자격 사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와 유사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격을 사칭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름을 알리려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독자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과 관련하여 엄격한 자격 기준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관'으로서 자처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투자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 왔기에 공적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원고 및 원고의 행적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으로서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단5086606	손해배상(기)
원	고	B	
피	고	1. C 2.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29.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8. 3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를 직접 작성한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는 과거 게이오대 출신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켰던 'S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유치자문관,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을 사칭하면서 도시재생·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고 전국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와 유사한 자(사기꾼)들이 상당수 활동 중이니 주의를 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S씨'로 언급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을 사용하여 강연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LH의 투자자문관을 사칭해 지방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강연 활동을 하는 S씨', 'S씨가 최근 LH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부동산강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② 홍보대행사 대표가 그러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홍보대행사 대표는 "확인해 보니 S씨는 과거 E대 출신의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었다"고 전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③ 원고가 실제로 F자치단체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F자치단체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자문관이 4명인데 이 중 S씨는 없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④ 원고는 G학회 가입 당시 제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G학회 정회원은 맞지만 가입 당시 제출 서류는 위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⑤ 이 사건 기사에서 '강연 일주일 전 S씨가 돌연 강소를 취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매도하였다(실제로는 강연 하루 전 원고의 출장으로 강연이 취소되었으므로

로 허위사실이기도 하다).

- ⑥ 이 사건 기사에서 ‘도시재생을 들먹이는 S씨와 유사한 사기꾼 횡행’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사기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원고는 도시재생 부분은 강의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고, 사회공헌 및 교육차 도시계획정보를 찾는 법을 일반에 가르치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가. 익명처리된 ‘S씨’가 원고로 특정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에는 ‘S씨가 2018. 8. 14. 울산 H 문화센터에서 “I”을 주제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는 내용이 있고, ‘울산 H 문화센터는 14일 S씨의 강연은 없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 게재 무렵 위 울산 H 문화센터 강의 관련 홍보 기사가 인터넷의 다수 매체에 게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S씨’라고 익명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읽어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울산 H 문화센터에서 2018. 8. 14.경 위와 같은 주제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S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상의 ‘S씨’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 1)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자문관을 직함을 사칭하여 강연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부분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내지 4, 6 내지 9,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LH 자문관임을 사칭하면서 여러 활동

을 하여 왔던 사실, 이에 위 공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원고에게 항의한 바도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2) 이 사건 기사 중 '홍보대행사 대표가 "원고는 과거 E대 출신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었다"고 전했다'는 부분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5,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E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임을 내세우면서 여러 활동을 하였으나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그러한 학력을 사칭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2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의료정보학과'를 졸업한 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3) 이 사건 기사 중 'F자치단체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자문관이 4명인데 이 중 원고는 없다"고 말했다'는 부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는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마치 원고가 F자치단체와 일체의 연관이 없는 것처럼 다소 단정적으로 보도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 중 위와 같은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 ① 이 사건 기사 게재에 앞서 피고 C는 원고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 통화 당시 원고가 피고 C의 질문에 "현재 F자치단체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답변하자, 피고 C가 원고의 그러한 답변이 맞는지(즉, 원고가 현재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자치단체 투자유치과에 탐문한 내용을 위 부분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에 대한 취재 내지 이 사건 기사 게재 무렵인 2018. 8.경 당시 원고가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이 아니었던 점은 진실로 보인다.

- ③ 'S씨는 현재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라고 말하나 F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은 4명인데 그 중 S씨는 없다고 한다.'고 기사상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S씨는 현재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활동 중이라고 말하나 F자치단체에 따르면 F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이 4명인데 그 중 S씨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4)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대한부동산학회 정회원 가입 당시 제출한 서류는 위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분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갑 제12호증, 을 제5,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부동산학회 정회원 가입 당시 원고는 LH와 관련된 연구소의 연구원이 아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가입서류상 허위 직함(LH주택공사연구소 연구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취재한 후 서류상 허위직함이 기재된 부분을 ‘위조’라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어,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세부적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5) 이 사건 기사 중 ‘강연 일주일 전 원고가 돌연 강소를 취소했다’는 부분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세부적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이 부분 사실 적시는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 6) 이 사건 기사 중 ‘지자체를 돌며 도시재생을 들먹이는 원고와 유사한 사기꾼 횡행’이라는 부분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 내지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 즉, ‘원고가 LH 투자자문관 자격을 사칭하면서 지방 문화센터에서 도시재생 관련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를 ‘사기꾼’으로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자격 사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여부

- 1)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상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들(즉, ‘원고가 LH 투자자문관 자격을 사칭하면서 지방 문화센터에서 도시재생 관련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 ‘원고는 과거에도 의사 자격을 사칭한 적이 있다’는 사실, ‘원고가 대한부동산학회 가입 당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2) 그러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 3)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실제로는 ‘전문가’라고하기 부적당한 사람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형 건설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내세우면서 언론에 본인의 이름을 홍보하고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며 일반인들에게 강연을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도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적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진실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인다.
- 4)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있었으나, 그러한 피고들의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의 경우 그러한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와 유사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격을 사칭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름을 알리려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독자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과

관련하여 엄격한 자격 기준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관'으로서 자처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투자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 왔기에 공적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원고 및 원고의 행적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으로서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41766 판결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형사사건 미확정판결문을 기자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한 것은 형사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 기사는 공보판사를 통해 익명화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판결문과 취재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짝사랑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기록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사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실을 조작하였고, 공무원인 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피고 언론사, 담당기사를 상대로 총 3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특정되지 않으며, 공보판사가 기자에게 판결문을 열람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제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D모(38, 피아노강사)씨”라고만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J모씨”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당시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일반인은 물론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사실에 관한 증거제출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여부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점, 이를 반영하여 각 법원은 공보관을 두어 그 지역 법원의 홍보 및 언론 보도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고, 이 사건 공보판사도 법원 내규에 근거하여 판결문을 공개하기에 이른 점, 판결문 공개 당시 원고의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는 물론 피해자 모두를 비실명처리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미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움직임도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 B로서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방청을 통해 이 사건 기사 내용 정도는 쉽게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피고 B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 또는 그 밖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4176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B	
		3.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24.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일간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뉴스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취재한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대상인 “A모(38·피아노강사)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약7007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13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2.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노6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3. 항소기각되었고, 이후 상고(대법원 2013도10692호)도 기각되어 확정(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다. 판결문 열람

피고 B는 2013. 3.경 당시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인 E(이하 ‘공보판사’라 한다)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원고) 및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비실명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피고 B는 위와 같은 판결문 열람 및 취재 내용을 토대로 2013. 8. 27. 16:36경에 피고 C 인터넷 사이트(F)에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G”이라는 제목 하에 ‘전주지법 H부(재판장 I)는 27일 좋아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기록행사)로 기소된 D모(38·피아노강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6월 25일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혼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J모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 J씨 호적전산기록에 혼인기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결혼신고 직후 J씨에게 “혼인신고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의 소중한 날이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실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과 J씨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D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C가 이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공보판사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B를 비롯한 법원출입기자들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판결문만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문 공개 행위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¹²⁾, 제5조¹³⁾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공보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만을 보고 “G”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J모씨에게 2012. 6. 28. 및 같은 달 25. 각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순서를 서로 바꿈으로써 모두 혼인신고 이후에 보낸 것으로 진실을 조작¹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불법적인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일반대중들로부터 악성 댓글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013. 8. 27.부터 2020. 2.경까지의 피해금 등으로 1억 7,500만원, 위자료 2억 원 합계 3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 또는 그 밖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보도 내용이 그 특정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머리글자·이니셜 또는 약칭·애칭·가명을 사용하는 등으로 기사·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12)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4) 문자 내용이 자체가 사실일지라도 그 순서가 바꿈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기사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보도 당시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후의 언론보도 내용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D모(38, 피아노강사)씨”라고만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J모씨”라고만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당시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일반인은 물론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사실에 관한 증거제출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여부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심리는 비공개로 정할 수도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점, 이를 반영하여 각 법원은 공보관을 두어 그 지역 법원의 홍보 및 언론 보도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고, 전주지방법원의 E 공보관도 2013. 8. 27.경 전주지방법원의 홍보 및 언론보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언론기관인 피고 C의 기자인 피고 B 등 법원출입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1조, 제2조15), 제3조16)에 근거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기에 이른 점, 다만 공보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당시 원고의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는 물론 피해자 모두를 비실명처리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 피고인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미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움직임도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 B로서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방청을 통해 이 사건 기사 내용 정도는 쉽게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피고 B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 또는 그 밖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5) 제2조(용어의 정의)

1. 정책보도: 사법행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2. 재판보도: 재판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3. 일반보도: 사법부 또는 개개 법원의 사법행정 기타 일반적 사항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제3조 (홍보업무)

-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서 하급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다. 피고 C, B의 책임 여부

1) “G”이라는 허위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 작성함에 있어 취재를 하지 않고, “G”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다음과 같이 살핀다.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의 중요부분인 ‘타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작성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취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좋아하던 남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남성에 대하여 ‘짜사랑 남성’이라고 표현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좋아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표현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 자극적이라거나 원고를 비난·모욕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사에 달린 원고에 대한 악성 댓글의 내용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고, 그곳에서 사용된 “G”라는 표현 역시 언론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J모씨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의 순서를 서로 바꿔 모두 혼인신고 이후에 보낸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조작이란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결과를 바꾸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순서가 시간적 흐름과 다르게 이 사건 기사에 작성·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실제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이므로 이 사건 문자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생활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법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등의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일반인의 경우 선의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정도의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커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침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보자가 제보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제보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제보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인의 마약투약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하였는데, 경찰에 영상과 함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피고 언론사에 해당 영상을 제보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지 보도되기 전에 미리 알려 신원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보 후 2주 동안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영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타 언론사에 영상을 제보하여 보도하도록 하였다. 타 언론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상 일부를 삭제하고 특정인을 제외한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였다.

원고의 제보영상과 특정인의 마약투약 관련 내용이 타 언론사에서 보도되자, 피고 언론사는 뒤늦게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방송하면서 타 언론사 보도와 같은 처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타 언론사보다 짧은 분량의 영상만을 보도하였고, 사건 원본 영상에는 원고가 전혀 드러나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배하여 원고의 신원을 노출하였고,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3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신원이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제보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며 제보자가 제보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제보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제보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피고의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타 언론사나 피고들이 이용한 이 사건 영상은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장소나 시간을 알 수 있고 특히 타 언론사 보도에서는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연도와 상세한 영상의 내용, 목격자 인터뷰까지 담겨 있어 이를 아는 사람이 볼 경우 이 사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영상의 일부만을 사용한 피고들의 보도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가 원고로 특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타 언론사에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였고, 타 언론사가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영상을 보도함으로써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영상 무단사용의 위법성 여부

제보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경우 이를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보자의 의사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제보자가 제보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제보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자료를 이용한 보도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보의사를 철회하고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한 행위 자체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단247525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21.
			2020. 8. 25.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2019. 4. 4.자 "D" 중 E에 대한 체포 단독 영상 보도의 제보자이고 피고 B은 위 보도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한 기자이다.
- 나. 원고는 E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하였는데, E는 2015. 11.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7. 6.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다. 원고는 2018. 10.경 E의 행위에 대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 사건 영상을 제보하면서 E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또 2019. 3.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상과 E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다.
- 마. 원고는 2019. 3. 8.부터 3. 16.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하여 보도하더라도 원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도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먼저 나가는지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신원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바. 피고 회사가 2019. 3. 22.까지도 이 사건 영상 관련 보도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9. 3.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한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 사. 원고는 2019. 3. 30. G 소속 기자에게 이 사건 영상과 E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고 보도 시 원고의 신원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 아. G는 2019. 4. 2. 이 사건 영상과 E의 마약 투약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원고의 요청대로 영상 일부를 삭제하고 E를 제외한 부분은 흐리게 처리하여 원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자. 피고 회사는 2019. 4. 4.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E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방송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한 공익신고자인데 피고들이 위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배하여 원고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방송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동영상의 제보자라는 사실을 노출시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비밀보장의무의 위배 여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였다가 보도가 되지 않자 G에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여 2019. 4. 2. 최초로 이 사건 영상이 보도가 된 사실과 피고들도 2019. 4. 4.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보도한 2분 3초간의 뉴스 전체의 내용 중 이 사건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1분 16초부터 1분 24초까지 9초 정도인데 E가 마약에 취한 듯이 손을 흔들며 혼잣말하는 영상인 사실, G는 2분 48초간 보도를 하면서 23초부터 47초까지 14초에 걸쳐 “I”라는 제목을 달고 영상 도중에 “몽롱하네. 몽롱하다. 몽롱해, 어 저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두꺼비 VIP”라는 자막까지 달았고 1분 7초부터 1분 25초 사이에는 목격자의 진술로 “2015년 E 마약 투약모습 직접 목격”에다가 목격자의 뒷 부분을 흐리게 처리한 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주사기가 확실히 맞아요. (E에게) 주사기를 놓아줄 때 제가 목격을 해서 방에서 다들 모여서 주사를 놓아주는데.. 항상 ‘주사기를 필로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사기 위주로.”라는 자막까지 달아 방송한 사실, 이 사건 영상은 4~5명의 제한된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 지역의 호텔에서 촬영된 사실, 원고 스스로도 피고 B에게 부산 지역만이 나오는 경우라도 원고가 촬영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J 오빠’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사건 영상에서는 명확히 청취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방송 보도에서는 말하는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나 피고들이 이용한 이 사건 영상은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장소나 시간을 알 수 있고 특히 G의 보도에서는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연도와 상세한 영상의 내용, 목격자 인터뷰까지 담겨 있어 이를 아는 사람이 볼 경우 이 사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영상의 일부만을 사용한 피고들의 보도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가 원고로 특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G에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였고 G가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영상을 보도함으로써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영상의 무단사용의 위법성 여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은 민주적 정치질서가 유지되는 기본바탕이므로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경우 이를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보자의 의사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제보자가 제보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이 제공한 자료

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제보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자료를 이용한 보도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보의사를 철회하고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한 행위 자체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영상의 사용에 따른 법익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무단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기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같은 영상을 사용한 G의 보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상 자체에는 E만 등장할 뿐 원고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의 보도 당시 이 사건 영상은 9초 정도 사용되었으나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 보도 전체의 내용은 E가 체포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에 따른 원고의 사생활의 침해는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라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동의한 G 보도에서 이 사건 영상이 상세하게 보도됨으로써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보도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의 제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247746 판결

기사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었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언론, 인터넷 등 공공 영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언론사가 원고의 삭제 요청에 응하여 실명을 삭제하였다면 성명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피고는 모 시민단체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원고가 특정 배우의 음란영상을 퍼뜨렸으며 자 극적인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영상물을 조작했고 허위로 특정 배우를 고발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실명을 보도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적시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스스로 언론 등 공공 영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알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성명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제반 사정에도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이전에 특정 배우에 대한 시위, 고발 등 소위 ‘안티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스스로 언론, 인터넷 등 공공 영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알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원고의 삭제 요청에 따라 원고의 실명을 삭제하였던 점 등 표현내용과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9가단524774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2019. 8. 9.자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기사를 작성·게재한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는 2019. 8. 31. 설립된 주식회사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피고 C(당시 주식회사 D 소속 기자였음)는 'E'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이는 인터넷 등에 게재되었다.
- 2) 이 사건 기사는,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배우 F(고 G 사건의 증인)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자들을 고발한다'는 시민단체 대표(H I단체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피고 C가 취재한 내용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 내에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F의 음란영상이 유포된 것은 J(원고)가 퍼트린 것이고, 원고가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영상물을 조작한 것이다. J(원고)는 허위로 F의 사생활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K' 등 인터넷방송에 보도하면서 음해공작을 벌였으며 캐나다까지 가서 1인 시위를 벌였다. J(원고)는 영상물 조작에 대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이번 영상물도 조작이며 이에 대해 원고에 대한 고발을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3) 이 사건 기사는 위 기자회견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보도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① 원고는 인터넷(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② 원고는 영상물(F의 음란영상)을 조작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F의 영상을 조작하고 조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F를 (허위)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 ③ 원고는 조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영상물조작에 대한 범죄경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 1) 원고 주장 ① 부분은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 2)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하는 위 ②, ③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사실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나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는 H가 주최한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대상인 기자회견 주최자인 H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H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 위 불기소결정서에는 ‘동영상을 원고가 조작했다고 F가 진술한 적이 있고, 그에 기하여 H는 원고를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3)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설령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는 소위 ‘공익제보자’인 F에 대하여 음해 및 과도한 괴롭힘을 지속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각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날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로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성명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은 한 개인 인격의 상징이므로 당해 개인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성명, 초상 등을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격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성명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과 관련되고, 성명의 표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제반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이전에 F에 대한 시위, 고발 등 소위 ‘안티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스스로 언론, 인터넷 등 공공 영역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알린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원고의 삭제 요청에 따라 원고의 실명을 삭제하였던 점 등 표현내용과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적 내지 의도와 같은 내심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단자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돌발행동을 하여 총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임금이나 복지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를 화두로 내걸고 활동하며, 원고 노조가 모회사 회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원고 노조가 정치적 이슈를 화두로 내걸고 활동한다거나 모회사 회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내지 의도와 같은 내심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단자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보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그 자체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계속 G J 회장을 문제 삼아왔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보도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모회사 회장을 비판해왔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② 목적 내지 의도와 같은 내심적 의사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단자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 원고와 같이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내심적 의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은 원고의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의견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536240	손해배상(기)
원	고	A노동조합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신문 「E」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F'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3. 피고 D 주식회사가 제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신문 「E」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F」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2011.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E'(H)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는 피고 D 소속 기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광고업,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잡지 발행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B는 [별지2]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2019. 3. 29. 인터넷신문 E에 위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G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돌발행동을 하여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이하 '㉠ 부분'이라 한다).
- ② 원고는 임금·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보다 정치이슈를 화두로 내걸고 활동한다(이하 '㉡ 부분'이라 한다).

③ 원고가 G J 회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다(이하 '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기사 중 ㉑ 내지 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위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D, C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 1) 이 사건 기사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제' 섹션에 게재되어 보도되었고, 위 기사를 작성한 피고 B는 피고 C가 아닌 피고 D 소속 기자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다.
- 2) 이 사건 기사 중 ㉑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㉒, 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3) 설령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가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적인 단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C의 관여 여부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기사를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F'에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기사는 'C'라는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편집국장에 관한 인사발령사항이 위 'F' 인터넷 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인 피고 B는 피고 C가 아닌 피고 D 소속 기자인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관리 시스템에 'E'라는 정기간행물은 등록되어 있으나, 'F'라는 별도의 정기간행물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인터넷신문 'E'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은 피고 D인 점, ④ 피고 C는 2014. 10. 3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터넷신문 'F'를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7. 3. 21. 인터넷신문사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그 무렵 수리된 점, ⑤ 이 사건 기사의 상단 및 하단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고, 'F' 인터넷 페이지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제'라는 표제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F' 인터넷 페이지는 독립된 정기간행물이 아닌 피고 D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신문 'E'의 경제면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내지 보도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목적이므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

먼저,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문언, 전체 흐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G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내에 들어가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여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부분 적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건대,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소속 조합원인 K, L는, G 주주총회가 열렸던 2019. 3. 29. 서울 서초구 M연구센터 앞에서 G J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실, ② 당시 위 M연구센터 앞에서는 ‘N’이라는 단체도 원고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위 단체는 주주총회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J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 ③ 위 주주총회장 안에서 ‘노동조합’이 J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던 사실, ④ 원고 소속 조합원 1명이 위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 주주총회가 있기 4일 전인 2019. 3. 25.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는 G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논평을 게시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G의 주주총회일인 2019. 3. 29. 정기총회를 개최한 점, ② 원고 소속 조합원인 K, L은 위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 3. 29. 오전 8시경 위 주주총회가 개최된 M연구센터 앞에서 기자들에게 ‘원고는 G J 회장이 주재하는 주주총회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G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여러 건 있었던 점, ③ ‘N’이라는 단체도 위 주주총회 당시 G연구센터 앞에서 J의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고, 주주총회장 안으로 입장하여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와 ‘N’이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위 주주총회장 안에서 ‘노동조합’이 J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위 언론보도에서는 위 ‘노동조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노동조합’이 반드시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그 소속 조합원 1명이 위 주주총회에 입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조합원이 원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장 안에서 시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G 주주총회장 안으로 입장하지는 아니하였고 별도의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B는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을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G의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그 자체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복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이슈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문언, 전체 흐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은,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고,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② 이 부분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나 정치적인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점, ③ 원고 역시 원고가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노동조합인 원고의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의 보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그 자체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계속 G J 회장을 문제 삼아왔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문언, 전체 흐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G J 회장을 비판해왔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② 목적 내지 의도와 같은 내심적 의사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단자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 원고와 같이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내심적 의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원고의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의견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살핀다.

18)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살핀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의 보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원고는 G,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그 활동 내용은 가입대상이 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관심 사안이라는 점, G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주요 대기업의 하나로 그 기관인 주주총회의 진행이나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공적인 관심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상당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D, B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D, B는 원고를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보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당시 G 주주총회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한 원고의 조합원인 K, L에 대해서는 물론, 위 주주총회 개최 전 원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평이나 주주총회 당시 위 K, L이 배부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전혀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원고가 주된 취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점, ③ 피고 D, B는 2017.

3.경부터 이 사건 보도시까지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여 왔는데, 위 기사들과 이 사건 기사는 주요 내용은 물론, 일부는 문장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바,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 B가 이 사건 기사 중 ㉠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 B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D,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D, B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D,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표현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와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보도일로서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9. 3. 2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정정보도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D는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인 ㉠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일부 수정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고, 아울러 피고 D가 주문 제2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55032 판결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했다라도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원장으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천시 산하 모 기관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9개월만에 사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였고 원고의 측근이 논문 비위 논란에 휘말렸으며 한 직원의 제보 형태로 '원고의 폭언 등으로 불만이 높았고 원고가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져 내부 동요가 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기사에 원고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기사의 삭제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의 피해와 보도의 공익을 비교衡量하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원장으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을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 사진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내 유일의 J 전문기관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F기관의 원장 직에 있던 자로 공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사임 사실과 이와 관련된 의혹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기사에 나온 원고의 얼굴 사진은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인 점,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즉,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보도의 자유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55503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1.
			2020. 11. 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¹⁹⁾

1.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 사이트(E)에 게시된 별지 1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2. 만약 피고 주식회사 C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9)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사와 B 모두에게 기사삭제 및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사삭제를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C사뿐이므로, 본 판결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경 부천시 산하 F 원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20.경 사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일간지 'C'의 발행 및 D 사이트(E)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8. 8. 23. 『H』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를 C A23면과 D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4.경부터 이직을 위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 이 사건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서 돌연 사직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한 I 본부장은 원고의 부하직원이었을 뿐 어떠한 친분관계가 없는데도, 이 사건 기사는 측근이라고 표현하여 일반 독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인상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중국 출장 당시 초청자 측에서 마련한 친목 성격의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기사는 일부 직원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마치 원고가 폭언을 하고 현지 업체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H

(본문) F기관 A(56·사진) 원장이 지난 20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특정 감사 실시를 앞두고 돌연 사임한 것이다. F기관은 경기 부천시 산하지만 국내 유일 J전문 기관의 상징성을 지닌 단체다. 2009년 설립 후 처음 지난해 원장 민간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4차 재공모까지 치렀고, 결국 A 원장을 임명했으나 9개월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부천시청 감사관실 측은 "직원 제보가 잇따라 갈등이 심각하다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고 했다.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A 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I 본부장의 석사 논문 비위 논란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7월엔 관련한 문서 유출 혐의로 K 팀장이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한 직원은 "평소 B 원장의 폭언 등에 불만이 높았고 지난달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퍼져 내부 동요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원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취임 이후 반대 세력의 흔들기와 개입이 지나쳐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사람이나 사건에 관하여 논평 혹은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는 비록 그로 인하여 타인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돌연 사직하였다고 표현한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F기관 원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인 사실 및 원고는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 ‘돌연’의 사전적 의미는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여서,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임한 것을 두고 돌연 사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돌연 사임했다는 표현 자체는 평가적 표현이어서 사실적시가 아니라 논평 또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다루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I 본부장을 측근이라고 표현한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기관에서 ‘L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사실, I 본부장은 이를 상당부분 인용하여 ‘M’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

성하여 이를 N대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사실, 부천시의 특정감사결과 용역보고서와 논문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N대학교에 이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본부장은 F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업무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측근'이라는 표현은 평가적 표현이어서 사실적시가 아니라 논평 내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하여 상급자의 측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다루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폭언, 중국 출장 당시 접대의혹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기사가 한 직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사화하였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이 사건 기사는 인용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가 평소 폭언을 하고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17, 18, 21, 23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회의석상에서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외부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조치할 것', '직장 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든지, 실력이 좋든지, 줄을 잘 서든지 해서 로열티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7.경 중국 출장 당시 초청자 측 업체와 2차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해당 자리에 초청자 측 업체가 여성 접객원을 들여보내기도 한 사실, 해당 자리에 동석하였던 직원이 이에 항의하여 자리가 종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발언은 청자에 따라서는 '폭언'으로 들릴 수 있는 점, ○ '폭언'이라는 표현은 평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F 소속 직원이 원고를 옹호하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40, 41면)와 피고 B에게 발송된 제보메일(을 제3호증)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 원고 스스로도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업체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비용을 현지 업체가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원고가 평소 폭언을 하고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업체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초상권 침해 부분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사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 사진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국내 유일의 J 전문기관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F기관의 원장 직에 있던 자로 공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사임사실과 이와 관련된 의혹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기사에 나온 원고의 얼굴 사진은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인 점,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즉,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보도의 자유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언론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36048 판결

제보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면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강남경찰서 모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모 클럽 미성년자 출입 적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원고에게 2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제보내용을 보도하였다. 수사결과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함께 청구하였다. 피고는 공익성, 상당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비록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제보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취재를 하지 않은 점, 보도 전 원고에게 전혀 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판결요지]

□ 위법성 조각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로서는 제보자와 T의 관계, 2018. 8. 9. 이후 제보자가 T에게 20,000,000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갚았는지 등에 관하여 취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R 주식회사와 제보자가 근무하던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데도 이에 대하여 취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 C은 J를 만난 첫날부터 J가 K로부터 받을 돈 3억 원이 있고 돈을 받으면 제보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J가 K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K이 중대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J에게 거액을 건넨 것처럼 제목에서 강조하여 보도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들어서 이 사건 보도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36048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16.
			2020. 1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되는 'D'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 제목을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 본문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도 내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이를 다른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위 피고의 07:00 D 시간에 그 제목을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본문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도 내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이를 다른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위 정정보도문을 보도한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남경찰서 E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국 F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9. 2. 21. 20:09경 'G'에서 H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럽 I에서 2018. 7. 7. 미성년자 출입사건이 발생한 후 2018. 7. 25. I에서 홍보행사를 열었던 화장품 회사의 전직 직원 J씨는, 미성년자 출입사건이 일어나자 I 측에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왔고, 회사 임원 K씨가 해결사로 나섰다면서 K씨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내용은 I L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그 중 300만 원을 배달비로 챙기라는 의미였다.

직원 J씨는 I L대표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은 후 K씨에게 갔더니 계좌번호 5개와 금액을 알려줬고, 이 돈을 500만, 100만, 500만, 300만, 3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나중에 K씨로부터 '그 돈 중 230만 원이 경찰에 전달되었다, 수사관에게 30만 원, 팀장에게 2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직원 J씨는 나중에 I L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경찰에게 준 액수가 너무 적다며 어이없어 했다고 밝혔다.

직원 J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사실을 알리자 I 측에서 2억 원을 들고 와 압박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다. 피고들은 2019. 2. 22. 06:14경, 07:17경 'D'에서 M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나항과 다항 기재 보도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라. 제보자 J는 2018. 8. 9. 20:12:36 N에게 5,000,000원을, O에게 1,000,000원을, 같은 날 20:12:37 P에게 5,000,000원을, 같은 날 20:14:09 Q에게 3,000,000원을, 같은 날 20:53:41 R 주식회사에 3,144,8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클럽 I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그 수사를 맡은 경찰 팀장이 I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7월 클럽 I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남경찰서 E팀장으로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2019년 2월 이 사건 보도 당시에도 E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원고의 지인·주변인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실적시 여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제3자인 제보자 J씨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클럽 I 측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건넨 200만 원을 원고가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S는 2020. 1. 30.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수사결과 원고가 I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사실에 의하면, K는 2018. 8. 9. 중국에서 직원 J(제보자)에게 I 대표 L의 연락처가 포함된 캡처화면, '현금 2천 받아서 너 3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2018. 8. 9. J가 K의 지시를 받고 L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현금 2,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 사실, K는 클럽 I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진행상황이나 담당자를 알아봐주기로 하고 2018. 8. 9. J를 시켜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8. 17. 직접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제보자 J가 2018. 8. 9.에 5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17,144,800원이 L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라거나 그 중 2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클럽 I 측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건넨 200만 원을 원고가 전달 받았다고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 1)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2)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클럽 I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점과 관련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등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보자 J는 2018. 7. 12. 피고 C를 처음 만났을 때에 'K에게 받을 돈 3억 원이 있다. 제보는 일종의 보험이고, 제보한 내용을 K에게 언급해서 압박할 것이고 만약 3억 원을 무사히 받으면 제보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위 내용 자체로 보아 제보자의 제보 동기는 자신이 3억 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K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전에 피고들은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취재하고 신빙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보자 J는 5개의 계좌로 합계 17,144,800원을 송금하기 바로 전인 2018. 8. 9. 19:00:18에 T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5개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에서는 I L대표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온 돈을 5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보도하였다. 만약 제보자가 I L대표로부터 받아온 현금으로는 곧바로 송금을 할 수 없어서 친구 T에게 부탁하여 우선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피고들로서는 제보자와 T의 관계, 2018. 8. 9. 이후 제보자가 T에게 20,000,000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갚았는지 등에 관하여 취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③ 또한 피고들은 Q가 2018. 8. 9. 20:14:09에 제보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21:07:15에 제보자에게 4,320,000원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R 주식회사에게 송금된 돈은 3,000,000원이 아니라 3,144,800원인데 R 주식회사와 제보자가 근무하던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데도 이에 대하여 취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④ K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제보자 J는 2019. 2. 20.경 K와 K의 형 U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후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K가 사건 무마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J를 만난 첫날부터 J가 K로부터 받을 돈 3억 원이 있고 돈을 받으면 제보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J가 K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K가 중대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J에게 거액을 건넨 것처럼 제목에서 강조하여 보도를 하였다.

- ⑤ 피고 C는 제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보도를 한 날까지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를 상대로 취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도 당일인 2019. 2. 21. 강남경찰서에 찾아가서 V과장을 만났을 때 '돈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라고만 언급했을 뿐이고, E팀장인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들어서 이 사건 보도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내용과 표현방식, 보도 경위, 피고 회사의 영향력, 사법경찰관이 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전을 전달받았다는 내용 자체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2.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클럽 I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달한 200만 원을 원고가 전달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되, 보도 위치, 방법은 주문과 같이 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는 하지만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닌 사적 영역의 사건을 언급하여 원고의 신원이 드러나게 하고, 형사재판중인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가해자라는 인상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보도로서 공익성, 진실·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실관계]

원고는 운동선수였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여성에게 강간미수,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재연 배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보도시점에는 공판이 진행중이어서 원고의 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충분한 취재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1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망인의 사망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위 사망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준 고소인에게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가해자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그 내용 자체는 원고와 고소인 사이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인권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전달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위 혐의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사	건	2019나6356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언론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1303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의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 1) C는 2016. 5. 6. 부산중부경찰서에 원고를 강간미수,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C를 “고소인”이라고 한다), 그 고소이유의 요지는 ‘원고와 고소인은 원고의 아들인 축구선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단체인 ‘I’ 활동을 하던 중 서로 형부, 처제라고 부를 만큼 친해진 사이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3. 27. 18:20경 부산 중구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 뒷자리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고, 2016. 3. 27. 19:1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모텔」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고소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 2) 원고에 대하여는 2016. 11. 28. 위 강간미수, 유사강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사건 당일 차량 안과 모텔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사건 직후 원고와 고소인의 여러 행동들, 고소인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과 제반 사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8.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68).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2018. 2.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노226], 위 판결은 2018. 2. 15.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 1) 피고 제작진은 2016. 11. 11.경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을 알게 되어 2016. 11. 11.부터 2016. 12. 3.까지 고소인과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2016. 12. 4. 원고의 집을 찾아가 원고를 만나고자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처 J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방송을 위한 취재를 하였다.
- 2)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을 확인한 후 2016. 12. 12. ‘G’이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와 고소인이 망인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중 친분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하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이라고 한다), ③ 그로 인해 고소인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고소인, 그리고 고소인의 얘기를 들은 C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7. 8. 17. 이후에도 피고는 2019. 12. 31.까지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일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를 거쳤는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8. 8. 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디지털 서비스 개편 등으로 인해 2018. 8. 6. 이후로는 위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²⁰⁾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0)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축구선수였던 원고의 아들이 5년 전(2011년 경) 석연치 않은 경위(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번개탄을 차량 안에 피워 놓은 채로 발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방송 장면, 자막, 나레이션 등으로 명확히 설명된 점, ② 망인이 2011년 경 사망하였을 당시부터 그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보도와 의혹 제기 등이 있어 왔기에 이는 이미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사건인 점, ③ 위 프로그램에서 명시된 정보(축구선수, 사망, 고속도로, 번개탄) 중 일부만을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해당 인물이 망인이고 결국 위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사람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인주변인 뿐 아니라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인물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의 성립

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뒤이어 고소인을 모델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하였음을 재연하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10분 40초경부터 13분 05초경까지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을 설명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더하여 재연 배우를 통해 원고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의 어깨와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지자 원고가 강하게 저항하며 뿌리치는 장면을 연출하여 방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표현방법은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할 때 원고가 차량 내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고소인의 어깨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위 재연장면의 방영 당시 화면 왼쪽 상단에 “재연”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L(가명) 씨 주장”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12분 41초경 “모텔로 이어진 2차 범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L씨는 그 모텔방에서 또다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라는 나레이션에 뒤이어 “집이 아니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하니까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거의 뒤 속수무책인(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라는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시켰는바,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내용에 당시 영상과 자막의 표현을 함께 종합하면, 일반 시청자가 보기에는 원고가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다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고 인식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고소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일상생활과 병원진료 모습을 통해 상세히 제시하였고,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 함께 고생한 사람에게 사과나 해명 대신 다른 선택을 한 부모들, 거기엔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19분 00초경), “L 씨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까지 옳은 일이라 여기며 자신이 해온 일들이 덧없이 느껴집니다”(21분 35초경), “그녀는 그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22분 32초경)라는 내용의 나레이션을 각 삽입하였는바, 이 프로그램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할 때 고소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그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고소인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뒤이어 고소인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적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망인의 사망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위 사망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준 고소인에게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가해자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그 내용 자체는 원고와 고소인 사이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전달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위 혐의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다른 성폭력 관련 혐의사실은 그 특성상 개인의 은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다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성폭력 관련 범죄의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로서는 이러한 성폭력 관련 혐의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② 망인은 프로축구구단의 축구선수였고 망인의 사망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공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국민의 관심과 검증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이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돕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은 원고와 고소인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따르면, 고소인이 원고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그에 따라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라는 내용은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이 발생한 배경 내지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원고의 아들이 프로축구선수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망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프로축구의 실제 경기모습(프로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니폼의 모습 등을 기초로 해당 팀이 M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고, 해당 팀 O포지션의 활약을 주로 편집함으로써 망인의 포지션이 O임을 암시하였음)을 편집하여 방송하였고,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의 발생장소인 차량이 바로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해당 차량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망인의 사망과 그 논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피고의 편집의

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게 되었다.

-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사건의 진행경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뒤이어 고소인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하였음을 재연하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피고 측 제작진은 원고의 배우자인 J와 2016. 12. 4.경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통화내용(을 제11호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장이 무엇이고 고소인의 주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통화과정에서 J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증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다.
- ⑥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이전에 피고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고소인과의 인터뷰,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C과의 인터뷰, 사건 이후 2016. 4. 6.경 이루어진 원고 부부와 고소인, C 4인 대화의 녹취록, 원고의 배우자인 J와 C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공소장,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의 진료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고소인 본인의 진술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진술이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더욱이 이 중 원고 본인의 진술내용은 매우 미미한 부분이다)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3자(대리운전기사, 모텔 근무자 등)의 진술이나 쌍방 진술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항에서 언급한 성폭력 관련 혐의사실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를 특정하여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된 경위, 위 프로그램이 사용한 표현방법과 형식,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성폭력 혐의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보도된 혐의사실의 내용 및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된 정도, 위 프로그램의 시청 대상과 전파 가능성(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피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역시 참작함), 피고가 위 프로그램 방송 당시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도, 공영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7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건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경우에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의사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위적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이상 별도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21).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1) 다만 주위적 청구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였음은 위에서 실시한 것과 같다.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이 장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등 보도게재청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명시된 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587715 판결

원고가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지엽말단적이어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종교활동을 하는 인물로서 원고 덕분에 사망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살아났거나,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이나 피눈물을 흘린다거나, 원고가 예수와 성모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다는 등 여러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해 왔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반론보도는 사실에 반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진실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방송의 본질적

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 언론사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87715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 후
가. 최초로 방송되는 'G'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1 내지 1-10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

- 자로 하여금 위 'G'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나. 인터넷 홈페이지(H) 초기화면의 중앙 상단에 별지 1-1 내지 1-10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제목 'G'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며(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도 정정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 'G' 연결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프로그램이 검색되는 동안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 후,
- 가. 최초로 방송되는 'G'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1 내지 2-10 기재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G'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나. 인터넷 홈페이지(H) 초기화면의 중앙 상단에 별지 2-1 내지 2-10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반론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제목 'G'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며(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도 별지 반론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 'G' 연결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 대상 프로그램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반론보도 대상 프로그램이 검색되는 동안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4. 만약 피고 주식회사 B가 제2, 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G'의 방송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금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가톨릭신자로서 세례명이 'I'이고 자신을 'J'로 소개해 온 사람으로서, 나주시 다시면 K리 및 나주시 교동 일대에 'M', 'N'으로 칭하는 장소를 만들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O'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O'에서 'G'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가 아래 나항과 같이 2018. 9. 5.자 방송을 위하여 취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방송의 보도

피고 B는 2018. 9. 5. 위 'G'이라는 프로그램에서 「P」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나눠준 Q를 먹고 사망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살아났다,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이나 피눈물을 흘린다, 원고가 예수와 성모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B에게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J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②	J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Q는 총대장군, 대장군, 분원성 대장군이 검출되는 음용 부적합이다. R이 1999. 12. 14. 숨이 막혀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를 한 상태에서 Q를 마시고 살아났다는 R의 모 피고 C의 종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R은 미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Q를 마셨을 뿐이다.
③	J가 보관하는 성모상에서 흘렀다는 피눈물은 마르고 굳은 상태에서 촬영기사 피고 D를 불러 촬영하게 하여 진정성이 의심된다. J가 보관하는 성모상에서 눈물 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실시간 장면은 없고 끝난 장면 밖에 없다.
④	J는 자신이 예수나 성모마리아에게서 받는다는 메시지를 제3자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고 나중에 J가 다들 보는 앞에서 그 메시지를 고쳐적었다.
⑤	J가 보관하는 성모상을 1986. 11. S성당에 맡겨 놓았다가 3개월 후에 돌려받으면서 J 측이 '당신 집이 아니어서 성모상이 울지 않는다'고 말했다.
⑥	J가 2011. 4. 22. 성금요일에 왼손에 쥐고 있는 피와 유사한 용액이 담긴 스포이드를 머리에 툭툭 쳐서 피를 흘린 것처럼 조작했다. J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실시간 장면은 없고 피가 나고 나서 끝난 후 장면 밖에 없다.
⑦	T대교구와 U는 J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즉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⑧	J의 남편 V, 아들과 딸들은 나주 K리 일대에 땅을 많이 소유하는 땅부자이고 어머머마하게 큰 집을 지었다.
⑨	W 신부가 2018. 8. 15. 쓰러졌는데 J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어 치료를 받지 못하여 W신부가 2018. 8. 18.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⑩	J는 자신이 기적을 행한다고 말한다.

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건 ①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 첫머리에 “당신이 지금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만인 앞에서 보여드리지요”라는 자막을 방송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자신의 방송이 진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 관련 부분(이 사건 ②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명 ‘Q’는 음용 적합이고, 피고 C는 1999. 12. 16.경 자신의 아들 R이 무호흡상태로 있다가 Q를 마시고 살아난 후 미음을 먹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이 사건 방송에서 인터뷰할 당시 R이 Q를 마시고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2) 판단

(가) 음용 적합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X센터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 중인 2018. 7. 12.경 나주시 Y 등에 위치한 ‘M’에서 ‘Q’라고 불리는 물을 무균채수병에 채수하여 X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센터는 2018. 7. 23. 위 물의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X센터는 2019. 9. 3. 위 물을 다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라고 불리는 물은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들(갑 제 15호증의 1 내지 6)은 원고가 지참한 물을 검사하거나 시료의 채취방법이나 채취장소가 불분명한 검사에 의해 도출된 결과여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아들이 Q를 마시고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00. 4.경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 R이 1999. 12. 14.경 학교 급식으로 나온 우유를 마시다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으나 같은 해 16.경 Z 성수와 Q로 되살아났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가 ‘나주의 Q 한병 가지고도 암도 치료하고, 눈도 뜨고 귀머거리도 듣고, 병어리도 말하고 그렇게 많이 치유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고, ‘피고 C가 2000.경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용어로 사망이래요... Q를 먹고 병원에서 포기했던 아이가 Q로 인해서 지금 많이 좋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을 준비 중인 2018.경 피고 C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 C가 ‘그때는 주위에서 Q 때문에 아이가 깨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뒤에 걸려서 나왔는지는 몰라요...’라고 답하는 장면, 피고 B측의 ‘사망상태에서 Q를 뿌리고 나서 바로 살아난 것은 아닌 거죠?’라는 질문에 ‘네 아닌 거고요, 중환자실에서 맨 처음에 미음을 조금씩 주고 먹을 때 Q도 같이 줬었거든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 피고 C의 아들 R은 1999. 12. 14. 질식으로 인한 경련을 일으켜 AA병원에 무호흡상태로 이송되어 기관 삽관 및 응급처치를 시행받은 후 AB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999. 12. 14.부터 1999. 12. 25.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대발작 간질 지속상태’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R은 질식 내지 경련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의 환자에게 물을 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C는 종전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Q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취지의 간증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아들이 의식을 찾은 후에 물을 먹였다는 피고 C의 최근 진술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눈물 또는 피눈물 흐르는 성모상 관련(이 사건 ③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M’ 등과 관련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던 피고 D는 종전에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 또는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방송에서는 피눈물이 말라서 굳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또한 원고측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액체 상태인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의 사진이 다수 있음에도 영상분석가인 피고 F는 눈물 또는 피눈물이 흐르는 순간의 사진이 없고 다 끝난 후에 촬영된 것 밖에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1987.경 성모상에서 눈물 또는 피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의 눈밑 또는 얼굴, 옷자락 등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맺혀 있던 물방울이 흐르는 장면만 있을 뿐, 이 사건 성모상이 눈물 또는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대한 장면은 전혀 없고, 맺혀있는 물방울이 눈물인지 조차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피고 D도 원고가 성모상에서 피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난 후 굳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불러 사진촬영을 하게 하여 성모상이 실제로 눈물 내지 피눈물을 흘린 것인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예수나 성모마리아의 메시지 관련(이 사건 ④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방송 제작팀에게 원고가 메시지를 받는 모습과 관련하여 비속어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였고, 원고가 예수님과 성모마리아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하여 설파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송하거나 그 메시지 내용이 황당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D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인터

뷰를 할 당시 원고가 성모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원고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후 원고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잘못 받아적었다며 이를 고쳐적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본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D가 원고의 행위를 묘사할 때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성모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는 부분을 믿지 못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를 모욕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부분 적시사실의 내용은 원고가 예수님과 성모마리아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조작하여 설파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예수님과 성모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받는 것인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그 메시지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S성당에 모신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건 ⑤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인터뷰를 할 당시 S성당에 모신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측이 ‘당신 집이 아니어서 안 운다’고 말하였고, 피고 B는 이를 그대로 방송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원고측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또한 피고 E는 위 거짓말에 터잡아 ‘그 성모상 가짜구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E는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 내지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이 있어 1986. 11.경 나주성당에 위 성모상을 3개월 동안 모셔놓았으나, 성모상이 눈물 내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 성모상을 건네준 원고측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원고측으로부터 ‘당신 집이 아니어서 안 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성모님이 성당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그 성모상 가짜구먼’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E가 자신의 경험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 피고 E가 ‘그 성모상 가짜구먼’이라고 말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발언만으로 원고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측의 사람들 중에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부분(이 사건 ⑥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촬영할 당시 원고는 손에 목주를 쥐고 있었을 뿐 스포이드와 같은 물건을 숨긴 사실이 없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영상 분석가인 피고 F는 원고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현상들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였고, 피고 B는 이를 그대로 방송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7 내지 8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 영상분석가인 피고 F는 원고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영상을 본 후, 원고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고 “만약 원고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실제 ‘피’와 유사한 용액이라면 순간적으로 스포이드처럼 머리애다가 툭툭 쳐서 놓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여 원고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만약에 진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면 카메라로 확대해서 그곳을 찍고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여 연출된 장면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영상분석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영상(갑 제87 내지 89호증)에는 ‘원고가 차에서 내려 걸다가 오른쪽에서 부축한 남자가 원고에게 무언가 말하자 위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며 왼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고, 그러자 머리에서 붉은색 액체가 흐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점, ㉢ 이후 ‘원고를 왼쪽에서 추가로 부축한 남자가 원고의 신음소리를 들은 후 원고의 치마를 젖혀 다리 쪽에 붉은색 물질이 묻혀져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다리 쪽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다리를 가리키는 동작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 남자가 알아서 원고의 치마를 젖혀 다리 쪽이 보이게 하는 장면 역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점, ㉣ 원고의 머리에서 흐르는 붉은색 액체가 ‘피’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관련(이 사건 ⑦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T대교구와 U은 원고와 관련된 현상(Q,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 등)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에도, 피고 B는 T대교구 등이 원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대교구는 2009. 2. 24. 「AC」이라는 제목 아래 “전임 교구장은 U의 신앙교리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1998. 1. 1. 원고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는 입장을 공지하였다는 내용, U의 신앙교리성은 위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 T대교구는 ‘나주 J와 그 관련 현상들’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과 신자들에게 거짓된 기대를 선동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대교구는 1998.경부터 200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하여 가톨릭 신앙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허황된 것이고, 이를 신봉하는 사제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식입장을 밝혀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T대교구는 원고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대교구가 원고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확정되지 않은 판단 유보 상태’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이 K리 일대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건 ⑧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주시 AD에 있는 ‘N’이 불에 타 재건축하여 ‘AE’ 명의로 등기하여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나주시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들은 대부분 농지여서 단체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V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아들 AF, AG는 K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순례자들의 현금과 관련이 없고, 딸들은 K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 이만실은 원고가 순례자들의 현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K리 일대의 토지들을 매입한 것처럼 인터뷰하였고, 피고 B는 이를 그대로 방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V, 그 아들들은 K리에 위치한 ‘M’ 및 나주시 AD에 위치한 ‘N’ 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 합계 41,949㎡ 약 12,711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스스로도 1985. 6. 30.경부터 미용실을 그만두고 종교활동에 전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현금 및 M에서 판매하는 물품(묵주, 스카프 등) 등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V 명의의 K리 일대의 토지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B는 위 토지들에 대한 매입자금의 출처 내지 토지들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B는

원고와 V의 아들 뿐만 아니라 딸 명의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방송하였으나, 이는 원고, V와 그 자녀들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W 신부가 뇌출혈로 쓰러진 부분 관련(이 사건 ⑨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W 신부(이하 'W신부'라 한다)는 2018. 8. 15.경 급체로 쓰러진 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2018. 8. 18.경 다시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W신부가 원고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W신부가 2018. 8. 15.경 M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쓰러져 M에 있던 사람이 119구급차를 부른 내용, 원고는 M으로 향하던 중 119구급차가 M으로 향하는 장면을 본 후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내용, 원고가 W신부의 입으로 입김을 불어넣은 후 신도들에게 W신부가 입김으로 인하여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내용, 이후 W신부는 2018. 8. 18.경 뇌출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내용, 피고 B는 W신부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방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원고의 입김 내지 Q와 같은 처치로 인하여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W신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카. 원고가 기적을 행한다고 말한다는 부분(이 사건 ⑩ 적시사실)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기적을 행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였다고 허위보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M에 나오는 물 일명 'Q'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등 여러 가지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가 보관하는 성모상이

눈물 또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한 점, 원고의 소변에서 금가루 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한 점, 원고의 입김을 불어넣어 장신부가 살아났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이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⑨ 적시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각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B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사건 ⑨ 적시사실 제외)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진실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하거나, 이 사건 방송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²²⁾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22) - ‘D는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음을 실시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㉓부분 중 일부)

- ‘D가 원고가 메시지를 제3자로 하여금 받아적게 하고 이를 원고가 고쳐찍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D는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받아적게 하거나 이를 원고가 고쳐찍은 장면을 찍은 장면이나 동영상은 없다’(㉔ 부분 중 일부)

- ‘원고는 2011. 4. 22.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 왼손에 흰 물건은 은백색 분도패가 달린 1단 자수정 팔찌 목주이고, 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실시간 동영상으로 AH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㉕ 부분)

- ‘원고가 나주시 AD에 짓는 건물은 불에 타서 소실된 기존 A를 나주 순례자들의 기도모임인 AE 이름으로 새로 건축하고 나주 순례자들이 함께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새로운 A이로서 공적인 건물이다’(㉖ 부분 중 일부)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 추가되었다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실질적으로 학원에 해당하지만 ‘국제학교’로 불리는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한 학생이 고액의 참가비를 받는 방학캠프에 참가하지 않자 한 학기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캠프 참가비를 내면 성적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했다는 내용, 해당 학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분도 학원 강사이고 자질도 검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고 학원을 국제학교로 오인할 우려가 없고,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사실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상호에 ‘학원’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추가된 점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위적 정정보도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반론보도청구를 추가로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요지]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반론보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등”이라 약칭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는 그 성질상 반론보도청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90223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가 발행하는 C 52~72면 사이에 [별지1] 기재 반론 보도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C 2525호에 보도되었던 ‘무인가 국제 대한학교 우후죽순 감독기관은 어디?’ 기사와 같은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C 목차란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넣어 위 반론보도문 게재 지면과 함께 표시하되, 활자 크기는 C 2525호 목차란에 표시한 ‘D’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초기 화면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2018. 9. 17.자 ‘D’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5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가 발행하는 C 52~72면 사이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C 2525호에 보도되었던 'D'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C 2525호에 보도되었던 'D'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해당 C 목차란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넣어, 정정보도문 게재 지면과 함께 표시하되, 활자 크기는 C 2525호 목차란에 표시한 '무인가 국제 대안학교 우후죽순, 감독기관은 어디'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초기화면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또한 피고는 2018. 9. 17.자 'D' 기사를 E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
2. 피고가 제1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8. 9.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가 발행하는 C 52~72면 사이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C 2525호에 보도되었던 'D'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C 2525호에 보도되었던 'D'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해당 C 목차란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넣어, 반론보도문 게재 지면과 함께 표시하되, 활자 크기는 C 2525호 목차란에 표시한 'D'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초기화면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반론

-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또한 피고는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2018. 9. 17.자 ‘D’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8. 9.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 학원(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사 주간지인 ‘C’를 발행하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는 2018. 9. 17. C(제2525호) 및 E를 통하여 “D”라는 제목으로 [별지4] 및 [별지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보관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① 부분’과 같이 해당 항목의 번호로 칭한다).

- ① 전국에 25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무늬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략) 국제학교로 불리는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주로 ‘인터내셔널스쿨’ ‘글로벌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 않는, 실제로는 학원이다.
- ② 학생수가 300명이 넘는 이 ‘학교’의 학비는 1년에 2,000만 원 선이다.
- ③ 아들의 카톡방을 읽고 화가 치민 G씨는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적 활동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G씨의 사이가 틀어졌다.
- ④ 지난 1월, 2월 G씨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방학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하려면 학비 외에도 추가로 약 30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 ⑤ G씨는 “아이들 고모가 몸이 좋지 않아 간병을 해야 한다”고 둘러대고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름에 나온 큰 아이의 성적표 중 3학기 성적이 통째로 0점으로 나온 것이다.

- ⑥ G씨는 “성적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할 때부터 학교 측이 발급을 꺼리더니 작은 아이 성적증명서는 아직도 학교에 주지 않았다”(고 했다).
- ⑦ (G씨는) “학교 측은 심지어 캠프 참가비 300만 원을 내면 아이의 3학기 성적을 정상적으로 준다고까지 했다”고 했다.
- ⑧ 자연히 (F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분도 학원 강사이고 자질도 검증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보도 및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아울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구한다.

가. ①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는 원고가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인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나, 원고는 F를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홍보하였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적이 없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F를 국제학교로 오인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나. ② 부분 관련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8. 9. 17. 당시 F에 등록된 학생은 266명이었고, F의 학비는 연간 1,764만 원이었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다. ③ 부분 관련

F의 부원장인 H는 F 소속 학생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정치 관련 기사를 올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학생(이하 ‘이 사건 학생’이라 한다)의 담임교사가 4~5개의 정치 관련 기사를 위 대화방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가짜뉴스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는 2017. 12.경 F에 항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라. ④ 부분 관련

캠프는 F 교육과정의 일부이고 정기적으로 내는 학원비로 캠프가 진행되므로,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비 외에 추가로 약 300만 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마. ⑤ 부분 관련

F는 이 사건 학생이 캠프를 불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12. 24.부터 2018. 4. 10.까지 F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성적을 산출하지 않은 것이고, 위 기간 중에서도 캠프가 포함된 Q2 기간(2017. 10. 20. ~ 2018. 2. 25.)의 성적은 산출되었고, Q3 기간(2018. 2. 26. ~ 2018. 5. 3.)의 성적만 산출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바. ⑥ 부분 관련

통상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원고는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F를 방문할 경우 이 사건 학생의 동생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학부모가 F를 방문하지 아니하여 위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사. ⑦ 부분 관련

F의 부원장은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먼저 위 부원장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면 성적을 산출하여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소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만 답하였을 뿐,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적을 이유로 캠프 참가비를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아. ⑧ 부분 관련

F의 강사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강사,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자인 강사, 석사 출신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사들 대부분 외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므로, F 강사들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허위이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4조 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

가) ① 부분 관련

이 사건 기사의 전반부에서는 F 관련 사례와 다른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의 사례를 소개한 후, 후반부에서는 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교육기관은 국내법상 학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사 내용은 'F는 국내법상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부분 기사 내용은 F와 같은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국내법상 학교가 아닌 학원임으로 학부모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F가 실제로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인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②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 내용은 'F의 학생수가 300명이 넘고, 그 학비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 ③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 내용은 'F 소속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F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라) ④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 내용은 'F가 개최하는 방학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비 외 추가로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마) ⑤, ⑥, ⑦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인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F는 이 사건 학생이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생의 3학기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학생 동생의 성적표도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캠프비 300만 원이 납부되면 이 사건 학생의 3학기 성적을 정상적으로 산출해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바) ⑧ 부분 관련

이 부분 기사 내용은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 소속 강사는 그 법적 지위가 교사가 아니므로 교사와 같은 수준의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제제기 내지는 의견표명일 뿐, F 소속 강사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① 부분 관련

갑 제2, 5, 8, 11호증, 을 제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국내법상 정식으로 학교로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소수이고 F는 이와는 달리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은 점, F를 포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에 대하여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한 점, F의 상호에 포함된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문구는 통상 '국제학교'로 번역된다는 점, F 소속 학생은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대신 F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소속 원생을 '학생'으로, 등록 절차를 '입학'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원생을 '졸업생'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졸업식'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F는 '12년 연속 지원자 100%가 미국 명문대 진학하였다'고 스스로를 홍보하기도 한 점, F가 발급한 '학생증'에는 '위 사람은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국내법상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부분 기사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②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당시 F에 등록된 학생은 266명이었고, F의 학비는 연간 1,764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숫자상 차이가 크지 않고, F 소속 원생들이 F 측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순수 학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판단되므로, 'F의 학생수가 300명이 넘고, 그 학비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이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③ 부분 관련

이 사건 학생의 담임 교사가 F 소속 원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나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F 측에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정치 기사의 내용이나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F 측에 항의한 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F 소속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F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을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④ 부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캠프'라는 말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으로 이해되고, F의 수업료 안내문에서도 수업료에 '캠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캠프비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학비는 구분되는 점, 캠프기간 동안 책정된 학비는 3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개최하는 방학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비 외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부분 기사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⑤, ⑥, ⑦ 부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는 이 사건 학생이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생의 3학기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학생의 동생의 성적표도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캠프비 300만 원이 납부되면 이 사건 학생의 3학기 성적을 정상적으로 산출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학생이 2017. 12. 26.부터 2018. 2. 10.까지 개최된 F의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학생에 대한 Q3 기간(2018. 2. 26. ~ 2018. 5. 3.)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 학생이 학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2018. 1. ~ 2018. 3.)은 Q3 기간보다 Q2 기간(2017. 10. 20. ~ 2018. 2. 25.)에 더 많이 걸쳐 있는 데도 Q3 기간의 성적만 산출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성적 산출과 관련하여 F의 부원장과 면담할 당시 F의 학칙에 캠프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위 부원장은

‘겨울캠프 빼고도 나머지 결석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 사건 학생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생이 겨울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F가 이 사건 학생의 Q3 기간에 대한 성적을 산출하여 주지 않은 것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학생의 겨울캠프 불참은 F가 위 학생에 대한 Q3 기간 성적이 산출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인다.

(2) 성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증명하는 문건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이 사건 학생의 동생에 대한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F 측이 이 사건 학생 동생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F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학생의 동생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F의 부원장은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와의 면담시, 4,000만 원이 미납된 어느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장을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것이고, 해당 학생 입장에서도 검정고시를 보면 F의 성적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학비를 내면 원장님이 이 성적을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묻자, 위 부원장은 ‘학비는 의무시니까 (납부)하시고요. 그거(성적)는 추후에 다시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가지요’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로서는 위 부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답을 듣고, 미납된 학비를 납부하면 F에서 Q3 기간의 성적을 산출하여 줄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⑧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① 내지 ⑦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이를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그런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항, 즉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기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F와 같은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국제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나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사실 학원과 동일하여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사에는 F의 상호나 시설 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F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자체만으로 이 사건 기사에 소개된 사례가 F에 관한 것임을 알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기사 삭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그 증명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2) 판단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사설 학원과 동일하여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지만, 국제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기자는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취재하고 관련 자료 및 법령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자는 원고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F의 부원장과 직접 연락을 하였으나 위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인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9. 4. 8. 위 학부모가 위 I 기자에게 진술한 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반론보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인 2018. 9. 17.로부터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6월 이내인 2018. 12. 13. 제기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는 위 제소기간이 지난 2019. 7.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등”이라 약칭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는 그 성질상 반론보도청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에 의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은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상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상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① 내지 ⑦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일응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권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기사 중 ⑧ 부분은 의견표명일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① 부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기사에 대하여 F가 학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운영하였을 뿐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임을 알고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본원은 국제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되어 인가의 요건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학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F가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쓴 적이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F가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가 아닌 학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의 상호를 표시하면서 ‘학원’이라는 문구도 병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반론보도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② 부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F의 학생수와 학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기사의 본질적 핵심에 벗어나 지엽말단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반드시 언론보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부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기사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정치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유로 학원 측에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 소속 강사가 그 원생들이 소속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정치적인 기사 내지 글을 올렸고, 학부모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점, 원고 역시 이 부분 기사에 언급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를 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을 뿐, 학부모로부터 정치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부모

가 정치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유로 학원 측에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도보청구는 원고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론도보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③ 부분 관련 원고의 반론도보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④ 부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기사와 관련하여 '방학 캠프 참가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반론도보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반론도보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미 앞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캠프비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구분되고, 실제로 캠프 기간 동안의 학비로 300만 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는 점, F는 캠프 참가가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고 캠프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학생과 같이 유급이 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 F 소속 학생으로서 는 사실상 캠프 참가가 강제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방학 캠프 참가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론도보청구는 원고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론도보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④ 부분 관련 원고의 반론도보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⑤, ⑥, ⑦ 부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기사와 관련하여 '⑤ 보도에 언급된 학생은 원비를 납입하지 않아 원생의 신분이 아니었던 관계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것이며, ⑥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꺼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동생 성적증명서 또한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없고, ⑦ 해당 학부모가 먼저 학원 측에 성적을 이유로 비용 제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일 뿐 먼저 학부모에게 비용납입을 제안하거나 성적을 정상적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도보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반론도보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학생에 대해서는 캠프 참가비를 포함한 학비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학생의 동생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각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 위 ⑥ 부분 관련 반론도보의 내용은 원고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론도보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⑥ 부분 관련 원고의 반론도보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 측이 이 사건 학생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캠프 불참 외에도 학비 미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성적처리 및 유급 관련하여 상의를 하기 위하여 F를 찾아오자 그 과정에서 F의 부원장이 '학비를 내면 성적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⑤, ⑦ 부분 관련 반론보도내용은 원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

법원은 반론보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기사와 반론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및 게재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3.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523541 판결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협회가 협회장의 여동생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공사를 맡겨 막대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고, 특정 마케팅 대행사와 유착하여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협회장의 연임을 3회까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반론보도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보도 중 일부의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그 청구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 즉 자신의 청구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52354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사단법인 D		
피	고	1. E공사 2. F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6.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1항 기재 보도문을 제2항 기재 보도방법으로 보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며 축구경기의 건전한 보급을 통한 국민의 여가 선용, 체력 향상, 스포츠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위 선양과 세계축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축구행정지원, 축구의 인적·물

적 자원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이다.

- (2) 피고 E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등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피고 F 주식회사는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및 VOD(Video On Demand) 유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피고 E공사는 2018. 9. 5. 방영된 'G'라는 프로그램에서 "H"라는 제목으로 별지 방영내용과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도를 담은 콘텐츠를 피고 E공사의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별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피고들은 원고의 협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I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그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 일정한 물품을 공급한 하청업체에 불과하고, 위 시공사의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에 납품한 실적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 ②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마케팅대행사와 유착하여 해당 업체에 마케팅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마케팅대행사를 통하여 후원사를 유치하고 있고, 이러한 대행사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특정 마케팅대행사에 마케팅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다.
- ③ 피고들은 원고가 종래 2회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협회장의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4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

(1) ① 부분 관련

이 사건 보도의 증반부에서는 원고의 협회장의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J그룹 일가가 이 사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던 2013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개하며 전년에 비하여 순이익이 약 25배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 급격한 순이익의 증가원인으로 회계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 인터뷰내용에서도 회계사는 예금, 투자, 관련 공사 수주 등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원고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실적만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순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보도 중 ① 부분과 관련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이 부분 보도내용은 '원고의 협회장의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사실을 넘어 이 사건 회사가 원고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② 부분 관련

이 부분 보도내용은 ‘원고가 그 협회장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특정 마케팅대행사와 유착되어 사실상 원고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특정 마케팅대행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3) ③ 부분 관련

이 사건 보도의 후반부에서는 2016년 협회장으로 연임된 인물이 원고를 계속적으로 장악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원고 관계자들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 원고가 2017.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한체육회와 정관개정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는데, 대한체육회는 정관개정안이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정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의견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부분 보도내용에도 ‘정관개정의 의결’이라는 문구만이 사용되었을 뿐, 정관의 개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원고 관계자의 인터뷰내용에도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내놓고 눈치 보면서 언제쯤 대한체육회에 이거를 갖다 낼까 그런 눈치를 보고 있었다니까.’라고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관개정안의 의결만으로 정관개정의 확정적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음을 명백히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보도내용은 ‘원고가 종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협회장의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협회장 3회 연임에 관한 정관개정이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보도의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① 부분 관련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E공사 담당기자의 취재요청에 대하여 원고 회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는 단지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부 공정에 참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보도에 그대로 포함된 점, 이 사건 보도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위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적시하였을 뿐, 위 공사를 전체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보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① 부분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② 부분 관련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E공사의 담당기자는 스포츠마케팅 분야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원고가 특정 마케팅대행사에게 대부분의 마케팅 업무를 맡긴다는 의혹을 갖고서 이 사건 보도를 구성하기에 이른 점, 그 담당기자가 원고에게 마케팅대행을 위한 업체 선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공정한 방식에 따라 마케팅대행사를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서면회신을 하였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원고가 마케팅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 60~70% 정도는 피고 E공사가 이 사건 보도에서 지적한 특정 업체이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인 것으로 보여 특정 업체가 사실상 원고의 마케팅 업무를 독점 대행한다는 표현은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② 부분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③ 부분 관련

갑 제11호증의2의 기재,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경 총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협회장의 연임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도 중 ③ 부분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등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1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①, ② 보도 중 일부의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대부분은 이 사건 ①, ② 보도의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그 청구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 즉 자신의 청구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원고가 특정 집단에 의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의혹을 밝혀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본연의 업무가 투명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를 수행한다는 의도에서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것이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보도에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E공사는 관련 전문가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인 자

료를 수집·검토한 다음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공사의 담당기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인테리어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듣고 마케팅대행사 선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원고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해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E공사가 이 사건 보도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282 판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로서 공공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어 추후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사실관계]

수영선수인 원고는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수영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을 취재하여 피해자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편파적인 인터뷰를 보도하여 수영 단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고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보도 및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인터뷰는 원고에게 징계나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기관을 비판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담고 있고,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추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추후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원고가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 소지,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을 뿐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추후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원고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K기관을 비판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불법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후 대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어떠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128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언론 사회면에 별지1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게재방식은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영선수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C언론을 방송하는 D 주식회사와 함께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형사사건 제1심, 항소심 결과

- 1) 원고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F시설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G와 모의하고, 2013년 2월 내지 5월경에 3회에 걸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 또는 의자 밑에 USB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 수영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자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205호, 8281호(병합)]. 위 법원은 ‘각 공범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공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G의 진술이 범행 시기, 범행도구 구입시기와 구입방법,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반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노9408호),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2년 9월 내지 11월경, 2013년 2월 내지 5월경에 G와 모의하여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와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이 범행시기에 관하여 수회 반복되었고, 역할분담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 17.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방송 보도 및 기사 게재

D 주식회사는 2019. 1. 17. 20:00경 방송된 ‘H’ 프로그램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인터뷰] 몰카 피해자 “I”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는 보도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9도2479호), 대법원이 2019. 5.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날에 피해자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별지1과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는 J단체와 체결하려던 2019년도 전속계약이 무산되어 연봉 7,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재산적 손해 7,000만 원+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K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이번에도 무죄가 나온 선수(원고를 가리킨다)가 수영대회에 나오려고 할 텐데 여자선수들은 수영대회에서 그 선수를 보기가 불편하고 싫다. 작년에 피해 선수 중 한 명은 가해자와 대학원 수업도 같이 들었다고 한다. K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K기관에서 쉬쉬하면서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원고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K기관을 비판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불법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후 대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어떠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후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G로부터 동영상파일을 건네받아 소지하다가 동료선수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다만 원고가 위 행위를 한 당시에는 불법촬영 동영상 시청, 소지,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 2) 이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시청하고 다른 선수에게 제공하였는데도 피해자들과 함께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K기관은 원고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들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고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수영선수들 사이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K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후 대응 실태를 밝히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3)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불법촬영물을 본 사람도 가해자이고 무죄를 받았더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K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을 보도한 것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보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원고 조합이 비인가단체인 모 노동조합과 단독으로 위판용역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하였고, 본래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수산물 양륙용역 수수료를 현 조합장의 지인이 대표이사인 용역업체에 단독으로 몰아주고 있으며, 원고 조합이 타 지역 어민들에게 낙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조합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 양륙용역 수수료는 어대에서 공제되는 것이어서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위탁판매 수수료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을 위한 보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보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판결요지]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언론사 등 보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정보도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11225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	고	1. C조합 2. D		
피	고	E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12. 1.

주 문

1. 피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3일 내에 발행되는 F신문의 1면 우측 하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8. 7. 24. 보도한 별지 3 기재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문 게재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3일 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F신문의 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2 정정보도문 본문 기재 내용을 10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문 게재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어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 D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는 신문 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주간지인 F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22. F신문 인터넷 홈페이지(G)와 2018. 7. 24. F신문 1면에 각 “H”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8. 7. 28. F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I”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별지 3,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순번	기사의 내용	원고들의 주장
①	위판용역을 비인가 단체(일명 J노조)인 A모씨와 단독으로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유한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J노동조합과 무관하고, K가 원고 조합과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어찌된 영문인지 위판용역을 비인가단체인 자칭 개별 노조와 과거의 관행대로 체결했다.	
③	공동대표체제에서도 ‘1인 명의의 통장에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특혜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내용은 종전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있던 것이고, K와 체결한 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④	사실상 조합원의 위판대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C조합의 판매수익이 아닌 현 조합장의 친구이자 대의원에게 단독으로 몰아주면서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고 조합의 규정상 원고 조합에는 수산물 위탁판매 수수료만 귀속되고, 수산물 양륙용역 수수료는 원고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방식, 용역업체의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은 없다.
⑤	C조합 활어 위판장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L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에 의해 C조합 활어 위판장 수산물 양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시에는 현 용역계약 당사자와의 수산물 양륙 용역계약은 당연히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와 체결한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에는 기사 내용과 같은 당연 해지 조항이 없다.
⑥	C조합은 위판액을 높이기 위해 타 지역에서 비조합원의 낙지를 수거하기 위해 외부 낙지 공급 책임자를 선정한 후 위판도 대행하고 있어 C조합의 위판질서가 문란하고 일시적 대량위판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등 조합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조합이 다른 지역 어민으로부터 낙지의 판매를 위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위판액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 어민들에게 낙지 판매의 위탁을 유도하거나 중용한 바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나. 사실의 적시 여부

갑 제1 내지 3, 12호증, 갑 제11호증의 4 내지 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은 ‘원고 조합이 비인가 단체인 J 노동조합과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③, ④, ⑤ 부분은 ‘원고 조합이 K와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수산물 양륙용역 수수료를 조합장 D의 지인이 대표이사인 용역업체에 귀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⑥ 부분은 ‘원고 조합이 다른 지역 어민으로부터 낚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위탁판매액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 어민들에게 낚지 판매의 위탁을 유도하거나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1) ①, ② 부분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의 4, 5, 7, 8, 10 내지 13, 1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8. 6. 18.경 K와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K는 수산물 양륙용역 업무를 하는 데 장애가 없는 업체이고, 과거 원고 조합과 M조합이 활어 위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존재하다가 이후 사라진 J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K가 원고 조합과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③, ④, ⑤ 부분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5, 8, 10, 12, 13, 18, 1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③, ④, ⑤ 부분의 적시 사실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원고 조합이 K에 지급할 수산물 양륙용역 수수료에 관하여 ‘수산물 양륙비는 K가 양륙한 수산물(활·선어 등, 낙지는 제외) 위판액의 1.5% 해당액으로 하며, 기타 수수료는 아래 표에 의해 어대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양륙비는 매일을 기준으로 K의 계좌 통장으로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고, ‘1인 명의의 통장에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계약 조항은 원고 조합이 2016.경 N, O 등과 체결한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나) 원고 조합의 규정인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 방법서’는 원고 조합이 어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한 수산물 매매대금에서 원고 조합에 귀속되는 ‘위탁판매 수수료’와 양륙용역업체에 귀속되는 ‘양륙용역 수수료’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조합에 귀속되는 ‘위탁 판매 수수료’에서 K에 대한 ‘양륙용역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2조는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원고 조합은 K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예고기간 없이 구제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K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K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K가 용역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 ‘K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를 들고 있을 뿐, L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라) L노동조합은 원고 조합과 복합 활어 위판장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비롯한 권리·의무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L노조가 활어 위판장 양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경우 용역계약을 당연히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원고 조합이 L노동조합에 수산물 양륙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6.경 N, O 등과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었던 계약 조항이다.

마) 원고 조합은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방식, 용역업체의 자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의 상대방을 K로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3) ⑥ 부분

갑 제11호증의 8, 10, 12, 18,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다른 지역 어민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위탁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어민들에게 낙지 판매를 위탁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⑥ 부분의 적시 사실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허위 사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① 내지 ⑥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든,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언론사 등 보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정보도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이 장에서는 기사삭제청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기술된 판결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2020년도에는 ‘가짜뉴스’ 관련 표현에 대한 판결이 다수 확인되었다.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7707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는 표현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사이트에 게시되어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기독교 관련 언론사인 피고는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원고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 언론사가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하였다는 내용도 보도하였다. 원고는 자신은 과학적 진실을 밝혀왔으며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 기사삭제와 더불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로 표현한 것은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기사의 해당 부분 삭제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짜 뉴스 유포'라는 표현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 ○ 제3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설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장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7707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1. 27.	
		2020. 1. 15.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B 웹사이트(C)에 게재되어 있는 2018. 10. 25.자 『D』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 기사 중 「'가짜 뉴스 유포자' 지목된 이들」, 「두 사람은 <E>가 지목한 가짜 뉴스 유포자 25인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다」 부분을 각 삭제하라.
나. 위 가항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기사삭제의 시기를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매일 100만 원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B 웹사이트(C)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 초기화면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별지3, 4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며, 위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B 가짜뉴스 팩트체크면과 별지3, 4 기재 각 정정보도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약사로서 현재 사단법인 F의 부원장이자 G협회의 대표이다.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 B(C,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2018. 10. 8. 『H』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2018. 10. 10. 『I』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2018. 10. 25. 『D』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3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정정보도청구

피고는 제1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강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다만 대한민국의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가 남성간의 항문 성관계라는 의학적 진실을 밝혀왔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제2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원고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성경이 불법서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 없는 혐오의 세력으로 기독교인을 몰아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2) 기사삭제청구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3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E가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는 강연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3기사 중 「‘가짜 뉴스 유포자’ 지목된 이들」, 「두 사람은 <E>가 지목한 가짜 뉴스 유포자 25인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다」 부분의 삭제를 구한다.

(3) 위자료 청구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3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 내지 3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제1, 2기사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및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

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제1기사에 대하여

피고는 제1기사에서 대표적인 반동성애 활동가인 원고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원고는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강연자이자 약사로서 대중들을 상대로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간의 항문 성관계라는 의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 2015. 12. 19. J언론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에이즈와 동성애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 2016. 3. 21. 개최된 K에 참석하여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은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말이라면서, 지금이 동성애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를 깨어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2016. 7. 17. L교회 예배 특강에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 말을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들을 토대로 원고가 “동성애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제2기사에 대하여

피고는 제2기사에서 원고를 포함한 반동성애 진영활동가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고 성경은 불법서적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들, 즉 ○ 원고는 개신교의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과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강연을 해왔던 점, ○ 원고는 ▶ 2016. 8. 19. M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단체가 성경이 불법·불온서적이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불온서적이 되고 하나님이 모욕 수치를 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발언하였고, ▶ 2017. 6. 24. N 교회의 초청강연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책이 불온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과 활동내용을 토대로 원고를 반동성애 활동가로 파악하였고, 반동성애 활동가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성경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제1, 2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 제3기사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고가 제3기사에서 원고가 설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장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 위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3기사에서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표현이 담긴 제3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기사 중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위 기사삭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제3기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3기사를 작성·게재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기사를 작성·게재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 내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짜 뉴스 유포’라는 표현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 ○ 제3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41603 판결

기사의 주요 부분에 허위가 없고,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에 운동을 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칭하고, 원고가 해당 종교단체가 유포하는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주요 운영·배포자라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와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동일한 발표자료를 사용한 점, 해당 종교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수차례 강연자로 참여한 점, 해당 종교단체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피고들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짜뉴스’라고 표현한 부분도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가짜뉴스’라는 표현도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며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가짜뉴스’부분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짜뉴스(Fake News)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그리고 ‘정보의 전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원고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오정보(misinformation)를 전달하고 있고, 결국 동일한 취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두고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①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사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없이 손쉽게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 속칭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 중 허위인 내용은 없고,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확대·재생산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점, ④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토론을 하면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것은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상대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 의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부분에 ‘의도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막는다면 오히려 사회구성원 간의 정당한 커뮤니케이션과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게 되고,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에 대한 지적은 토론의 기초가 되고 양측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공통배경지식(Common Ground)과 전제를 지키기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41603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변	론	2019. 12. 18.
판	결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F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되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G"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정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라.
2. 피고 회사는 위 제1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1 정정보도문을 F 사회면과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F 일간신문지 1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정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G"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정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2 반론보도문을 F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되 해당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반론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G"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반론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라.
2. 피고 회사는 위 제1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2 반론보도문을 F 사회면과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F 일간신문지 1면에 별지2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반론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G"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반론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F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3 기사 중 별지4에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라.
2. 피고 회사가 제1항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의사로서 H단체 상임이사이자 I요양병원 원장이다.
- 2) 피고 회사는 일간지 'F(이하 '이 사건 일간지'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J)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18. 9. 27. 이 사건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G」라는 제목 아래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8. 10. 9. 「K」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후속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들은,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적이 없고, L과 어떠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 인물이 아님에도, '원고가 개신교 가짜뉴스의 주요 운영·배포자이고, L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제1 예비적으로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2) 또한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기사에 대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이 문구의 삭제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제1 기사는 그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 아닌 원고의 일방적인 의견 내지 자의적 평가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이에 더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도 갖추고 있지 않다.
- 3) 또한 이 사건 제2 기사가 공익성도 전혀 없고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에서 방해배제를 위하여 청구 가능한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는 그 전제부터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원고가 특정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 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

갑 제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들은 ① 원고가 L(이하 'L'라 한다)이 주관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다양한 행사에 반복해서 주요 강연자로 등장하는

인물로 L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L이 유포하는 기독교발가짜뉴스의 주요 전파자 중 한명이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라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① 부분에 관하여

을 제3 내지 10, 12,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와 L의 대표자인 M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쟁점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동일한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L이 주최하는 행사에 여러 차례 강연자로 참여하였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L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적시된 N, O, P, Q, M과 함께 R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③ 피고들은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한 가짜뉴스 관련 영상과 유튜브 채널 목록을 분석한 결과 그 영상과 유튜브 채널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25명 중 21명을 'L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개인이 단체의 임원, 회원 또는 그의 가족 등의 위치에 있거나 단체활동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L과의 관련이 있다고 표현한 인물들에 대하여 'L이 주관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다양한 행사에 반복하여 주요 강연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다.
- ④ L의 대표인 M 등은 이 사건 제1 기사에 포함된 "기독교발 혐오 뉴스를 왕성히 전파하는 25명 가운데 21명이 L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최근 기독교발 가짜뉴스 22개가 모두 L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 E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18년 형제 3644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개신교발 가짜뉴스 22건 선정 및 L과의 연관성' 등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위 피고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② 부분에 관하여

갑 제13, 16, 22 내지 24호증, 을 제9, 12, 16, 17,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여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원고는 발표자료와 발언을 통하여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행동도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되어 합법화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동물과 성행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동성결혼 합법화와 수간 등 합법화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대표적 사례로 꼽은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2010년에 수간을 불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외에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2010년대 이후에 수간이 불법화되었다.
- ② 원고는 의사로서 원고가 한 강연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중심으로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것으로 수간 합법화에 대한 발언 부분은 원고의 강연 내용 중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성애 합법화 후 수간 합법화’ 부분은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원고 주장의 근거로서 여러 강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원고가 ‘동성결혼 합법화 후 수간 합법화’ 중 사례로 언급한 호주, 영국, 네덜란드의 기사들은 그 기사 내용이나 기사를 보도한 매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벤트이거나 패러디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위 기사들을 수간 합법화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 ④ 원고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이지, 그 속성을 들여다 보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동성애 독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 전체주의와 파시즘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나,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가짜뉴스(Fake News)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그리고 ‘정보의 전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원고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오정보(misinformation)를 전달하고 있고, 결국 동일한 취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두고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 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1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② 부분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진실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대부분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2 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그런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사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없이 손쉽게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 속칭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 중 허위인 내용은 없고,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확대·재생산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점, ④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토론을 하면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것은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상대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 의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부분에 ‘의도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막는다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정당한 커뮤니케이션과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게 되고,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에 대한 지적은 토론의 기초가 되고 양측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공통배경지식(Common Ground)과 전제를 지키기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 521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 속칭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밝혀서 그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설령 일부 동영상에서 원고의 실명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당성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①, ②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기독교계 전문매체인 ‘T’ 등의 도움을 얻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수집하고 그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노트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 및 검증하려고 노력한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100160 판결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기사삭제를 청구하였으나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재단법인인 원고에 관하여 취재를 거쳐 원고 단체 회장이 이사회도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을 측근으로 채웠으며,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무부서에 회계내역을 제출하였고, 회장이 일정을 소화하고 늦게 돌아와 개들을 20시간 이상 굶긴 사실이 있고, 원고가 동물들에 대해 심각한 자가진료본 아니라 불법진료까지 자행하였고, 주사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 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문제삼은 내용들이 허위보도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후 원고의 항소로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수원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14112 판결)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항소심 판결문을 별도로 수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내용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의 판단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의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이상과 같이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100160 기사삭제 청구의 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C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 F, G, H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기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 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동물보호,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계몽·홍보, 동물보호소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C)를 통하여 기사나 영상을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 및 방송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17. 7. 27. 별지 1 기재 제1항의 영상을, 2017. 7. 28. 별지 1 기재 제2, 3항의 각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2017. 7. 31. 별지 1 기재 제4항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10, 23, 24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I씨는 이사회도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은 채 재단 이사들을 자기 측근들로 채웠다', '이사회 결의 없이 2016년 회계내역을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다리를 못쓰게 된 새끼 고양이들이 생겨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는 없다', 'I회장이 ... 밤 8시경 도착하는 바람에 개들이 20시간 이상 굶었다는 점이다', '심각한 자가진료뿐만 아니라 불법진료까지 자행', 'I씨는 입양보낸 개체들에 대해서도 애플 경우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여 항생제를 놓고 수액을 놓고, 영양제를 놓기도 했다', '전 J협회 회장 K 약사, 불법행위로 동물학대 지원', '손상성폐기물인 주사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것은 엄연한 범위반이다'는 등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1 기재 각 기사나 영상(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수의사법위반이나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자가진료 문제로 원고와 대립하고 있는 수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나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압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각 기사에 대하여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점에 관하여 본다.

갑제2 내지 5, 11 내지 13, 16, 내지 22, 30, 33 내지 38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내용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의 판단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 I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의사범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I씨는 이사회도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은 채 재단 이사들을 자기 측근들로 채웠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이사 중 K는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동물약품을 판매하였는데, 원고 대표자는 거래관계에 있던 K를 2016. 2. 5.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 ② '이사회 결의 없이 2016년 회계내역을 단독으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정관 제10조), 2016. 2. 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의 선임 외에 2016년도 회계내역에 대한 의결이 없었으며, 원고는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별도로 2016년도 회계내역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제2보호소로 등록하여 놓고'라는 내용의 경우 I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기 전에 마련하였던 장소를 원고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원고의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용과 관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데(정관 제6조), 원고의 대표자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할 뿐 이사회 결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④ ‘강아지가 고양이들 사이에 자라고 있으며 산책 등 기본적인 케어를 전혀 못받고 있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는 대표자 I의 사유재산을 제2동물보호소로 개조하여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왕성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할 뿐 같은 공간에 고양이와 개들을 함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에 일부 과장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총 19마리의 개들을 보호 중인데 1년이 넘도록 산책을 한번도 못했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가 먼저 보호소 내의 개들을 충분히 산책시킬 수 없는 것은 동물보호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산책부족으로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개들에게 개껌을 주는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 ⑥ ‘불켜둬야 잘 잔다며 24시간 내내 불켜놔’는 부분의 경우 원고는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양이의 부상 정도나 상해 부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밤 동안 불을 켜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밤 동안 불을 켜두는 것은 자연상태와 비교할 때 환경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 ⑦ ‘22평 공간에 수십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하다 보니 편하게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에 50마리 내외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22평 시설에 60마리 가량의 고양이들을 사육하는 것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문제로서 … 동물 과잉수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수의사 M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⑧ ‘다리를 못쓰게 된 새끼 고양이들이 생겨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의 경우 피고가 “고양이는 쓸데없이 이런 거로 수술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고양이는 뼈가 잘 붙어요. 병원에 가서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원고 대표자의 녹취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⑨ ‘I회장이 … 밤 8시경 도착하는 바람에 개들이 20시간 이상 굶었다는 점이다’는 부분의 경우 원고는 대표자 I가 2016. 11. 26. 23:00경 사료를 주고 J협회에 참석한 다음 2016. 11. 27. 20:00경 동물보호소에 다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N이 2015. 11. 1.부터 10:30에서 13:30까지 근무하는 외에 위 일시경 다른 직원들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호소가 동물들이 알아서 사료를 먹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⑩ 'I씨는 개들이 반가워서 짖는 소리에도 밀대로 벽이나 바닥을 쿵쿵치면서 욕설을 내뱉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들은 I씨에게 공포를 느끼고...'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대표자가 보호소 주변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애견 훈련사 등의 조언을 받아 벽이나 바닥을 치는 방법으로 개들이 짖지 못하게 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는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보호받고 있는 유기동물이 원고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⑪ '심각한 자가진료 뿐만 아니라 불법진료까지 자행'이라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대표자가 동물의약품을 구매하여 보호소 내의 동물들에게 투약 등을 하고 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 6. 23. 제공한 보도자료(갑제22호증)에 의하면, 2017. 7. 1.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기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개정된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그 밖에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만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자가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심각한 자가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사인 K로부터 동물의약품을 구매하여 보호소 내의 동물들에게 투약하거나 처치하였는데, K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불법진료'라는 표현 또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⑫ 'I씨는 입양보낸 개체들에 대해서도 아플 경우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여 항생제를 놓고 수액을 놓고, 영양제를 놓기도 했다'는 내용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원고의 대표자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금 다니시는 병원 있으세요? 야(고양이)는 예민해서 웬만하면 집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정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갈게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동물의약품 구매내역(갑제3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는 K로부터 아미툽(반려동물 종합영양제), 톨테딘(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메티캄(관절용 치료제), 고양이백신, 에스멕틴(내·외부 기생충 구제용), 엔젤하트(심장사상충약), 펠리샷(고양이 종합백신) 등을 구매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주사기를 사용한 후 비닐봉지에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대표자는 입양을 보낸 동물들에게도 항생제나 수액, 영양제를 직접 투약하였다고 보인다.

⑬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모 약사, 불법행위로 동물학대 지원'이라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이사 K는 원고의 대표자에게 동물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질의회신서(갑제16호증)와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회신집(갑제17호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이 소속된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소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봉사활동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수여하는 행위가 소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K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사법위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동물학대 지원’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어도 K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은 아니다.

- ⑭ ‘자연스레 후원금도 줄고 일반봉사자들의 발길도 끊기는 중이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2016년 결산내역(갑제21호증)에 163,236,219원의 후원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할 당시 기사내용과 달리 원고에 대한 후원금이 종전보다 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봉사신청서(갑제19호증), 자원봉사확인서(갑제20호증), 봉사활동문의(갑제21호증)는 2017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후의 봉사신청이나 봉사내역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⑮ ‘증거인멸정황포착’ 내용의 경우 원고의 직원이었다가 해고된 O의 신고로 2017. 7. 24.경 남구청에서 동물학대정황에 대한 점검을 나왔는데, 2017. 7. 28.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이후 원고의 대표자는 2017. 7. 31. 동물들을 옮겼으며, ‘언론보도 이후 개보호소에 개들을 계속 굶기고 있으니 현장에 가서 확인해달라’는 민원제기로 구청직원이 2017. 8. 2. 원고의 보호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와 같은 전후사정들을 고려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⑯ ‘손상성폐기물인 주사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이다’는 내용의 경우 실제 원고의 대표자는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폐기하였으며, 피고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녹색환경과 담당공무원 Q로부터 원고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어서 ‘법위반이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허위사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⑰ ‘I씨는 심지어 R 전회장을 사칭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내용의 경우 원고의 전 대표자 R이 ‘초대 회장의 이름 아래 협회의 공문들이 나가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가 ‘사칭’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정보도를 통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면 특정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기사삭제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으며, 고용노동부 지청과의 유착 의혹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증거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거나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되지 않은 점, 기존노조와 신설노조를 차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보도할 때는 언론이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며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와 기사삭제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기사삭제청구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사와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비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삭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2014	정정.손해배상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은 [별지3] 기재 정정보도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정정보도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위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대상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피고가 기사를 제공한 다른 사이트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해당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하라.
2.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B(C)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을 이 사건 대상 기사 제목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정정보도문이 이 사건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피고가 기사를 제공한 다른 사이트에도 [별지2]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해당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에서도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 사건 대상 기사를 삭제하라.
3. 피고가 제1,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만료일부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B”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2. 07:00경 「D」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 ① A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노무관리 방식은 E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양사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나리오에 담긴 전략대로 움직였다. 노조 파괴를 유도한 뒤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 ② A와 고용노동부 F지청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3월 G모 전 지청장, H 전 과장 등 5명을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3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으로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는 'A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노무관리 방식은 E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양사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나리오에 담긴 전략대로 움직였다. 노조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A와 고용노동부 F지청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3월 G모 전 지청장, H 전 과장 등 5명을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3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이 사건 보도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이라기보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점,
- ② 이 사건 보도에는 '앞서 I 부품사 E도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지난 2월 법원은 J E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여 일반 독자로서는 비록 다른 기업의 사례일지라도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

는 점, ③ 이 사건 보도에 ‘협의를 받고 있다’, ‘의혹도 제기됐다’와 같은 유보적인 표현도 존재하나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및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을 고려하면(이 사건 보도에는 ‘다른 2명의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6월 노동부 통영·부산지청으로 전보 조치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보 조치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고,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부당노동행위)’, ②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공무원 뇌물제공)’로 구분되는바(이하 ‘이 사건 제○적시사실’이라 한다), 이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①적시사실(부당노동행위)

갑 제2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부당노동행위)’는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는지 여부

- ① K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은 1989. 6. 21. 설립되었고, 위원장 L, 조합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M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라고 한다)은 2016. 5. 11. 설립되었고, 위원장 N, 조합원 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② 원고는 2015. 6. 11.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사분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대한 각 부문별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함'을 목적으로 '비상경영 대책(분규 파업 시)'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사분규 시 '영업', '생산', '안전 및 환경', '물류', '노무'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노동쟁의 유형별 원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문건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기존 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위 문건에 따르면, 원고는 기존 노조의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원만한 단체협약 타결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임금협상 전임을 근거로 원고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건의 내용은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문건 작성의 목적상 임금협상 전에 작성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그 기재 내용 또한 노동쟁의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대응 방안에 불과하다.

- ③ 원고와 O 및 P 주식회사 사이에 2015. 8.경 체결된 '노사관계 개선경영 및 법률자문 계약서'와 추가적으로 작성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실행자문 제안서'의 각 기재를 보면, 해당 계약은 '원고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법무법인 등이 경영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노조가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신입사원 초임 삭감에 관한 노사협상의 타결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기존 노조가 파업 등 실행행사를 불사하고 원고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협상 역량 강화, 노조 및 개인의 조직적 저항 등 각종 응급현안 발생 시 법률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관리 방법을 자문하고, 향후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원고 주도적 노사관계 구축 토대의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무법인과 기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한편, '비상경영 대책(분규 파업 시)'이라는 원고 측 내부 문건의 '노무관리' 항목에 직장폐쇄의 일정, 준비사항, 시행사항 등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노조의 파업(부분, 전면)에 대한 원고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직장폐쇄(전체 및 일부)를 시행함에 있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관할 시(구)청에 직장폐쇄 신고', '작업장 전체는 물론이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인원 및 일부 사업장만을 국한하여 가능', '직장폐쇄는 정당한 요건으로 방어적, 수동적으로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직장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요건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기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뒤,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원고 측 관계자는 '원고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입건이 되지 않았고, 기존 노조가 주장한 다른 부당노동행위 점에 관하여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 사이의 성과급 등 차별지급으로 기존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노1258호).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 가동 및 파업 유도 등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 ① 기존 노조는 2016. 2. 1. ‘투쟁기금 미 입금 및 단체행동 이탈’을 이유로 10명의 노조원을 영구 제명하였고, 해당 인원 에 대한 조합비 공제 제외도 요청하였다. 기존 노조는 2016. 3. 9. ‘단체행동 이탈’을 이유로 10명의 노조원을 추가로 영구 제명하였고, 해당 인원 에 대한 조합비 공제 제외도 요청하였다.
- ② 원고 측 관계자는 2016. 4. 26.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Q에게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장 내 제명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공급증이 있어 첨부와 같이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위 법무법인에서 원고 측 담당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부하직원과 소통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노조 탈퇴 여부에 대한 의논, 상담, 조언 일체 금지(부당노동행위 위험 있음), 객관적 사실만 통보하고 오로지 직원 본인이 검토, 판단,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기존 노조는 2017. 7. 5.자 기자회견문에서 ‘기획된 노조탄압 사례에서 늘 보여주듯 사측은 복수노조설립을 위해 법무법인 O에 자문을 요청하고 복수노조 설립 신고를 해 파업유도,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노조무력화의 수순을 충실히 밟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기존 노조와 별개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은 원고의 주도와 지원 때문이 아니다’, ‘원고가 법무법인에 발송한 전자우편은 원고가 주도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에서 영구제명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린 것이다’, ‘전자우편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을 도와달라는 자문요청이 아니라 복수노조가 되면 교섭대표 노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 ④ 신설 노조는 2017. 7. 10. 및 2017. 7. 19. ‘신설 노조는 원고에 자문을 요청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영구 제명을 받은 조합원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외부 인

사와 교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설립하였다’, ‘신설 노조는 자주적으로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 측 관계자가 2016. 4. 26.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Q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을 근거로 ‘원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측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복수노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측 관계자가 신설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⑥ 신설 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신설 노조 설립의 자주성을 강변하고 있고,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에서 영구 제명된 후, 신설 노조의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 측 관계자가 발송한 전자우편도 ‘사업장 내 제명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질의한다’는 내용이며 원고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제명자들을 중심으로’라고 명시하여 단순히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질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②적시사실(공무원 뇌물제공)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공무원 뇌물제공)’는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측 관계자가 ‘거래처 구정선물 지급(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 해당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장을 포함하여 감독관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고용노동부 F지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원고와 고용노동부 F지청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나아가 뇌물공여죄 등의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언론매체로서는 보도가 과장,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측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F지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측 관계자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 정정보도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되, 게재 방법 및 추후 조치 등은 주문과 같이 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그런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방송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방송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기사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비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삭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사건 제①, ② 적시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비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측 내부 문건(을 제1 내지 8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이 사건 보도의 기초 자료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원고도 위 기초 자료가 원고 측의 내부 문건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을 허위라고 판단하나 이 사건 보도에 이를 당시 언론기관인 피고로서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나) 취재 기자인 구태우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노조의 주장과 원고 측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 등으로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고소 내지 고발로 원고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당시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다) 피고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원고 측의 내부 문건이 존재했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의 고소 내지 고발로 인해 원고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가졌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①, ②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F A X : 02) 397-3089

지역

-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402호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405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01 다모양빌딩 3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21년 9월 29일 인쇄

2021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석형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 397-3041~5

팩스 02) 397-304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